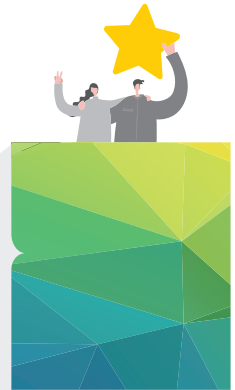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해지는 **coop**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모두가 행복해지는 **coop**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CONTENTS

01 자금지원

1. 일자리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08
2. 2019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
3. 2019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판로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
4.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5
5.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8
6.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BI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7. 2019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
8.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9. 소공인제품 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8
10. 2019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지원사업 / (재)예술경영지원재단	30
11. 2019년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32
12. 로컬푸드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
13.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공사	35
14.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화 지원 /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36
15.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진흥원	38
16.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 한국정보화진흥원	39
17.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0
18.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9
19.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 중소기업중앙회	64
20. 기술보증지원 / 기술보증기금	65
21.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기금	67
22. 특화보증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69
23.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5
24. 특례보증신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7
25.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80
26. 2019년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 (재)함께일하는 재단, 서민금융진흥원	83
27. 공공구매론 / 중소기업중앙회	84
28. 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	85
29. 도시재생특례 보증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86
30. 사회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융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88
31. 2019 coop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0

0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94
2.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7
3. 소상공인 경영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9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1
5.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3
6. 경영컨설팅 / 신용보증기금	105
7. 신용관리 컨설팅 (CRC : Credit Risk Control) / 신용보증기금	107
8.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8
9.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110
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1
11. 2019년 과학기술 기반 협동조합 설립 집중 과정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12
12.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3
13.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6
14.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7
15. 2019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8
16.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9
17. 2019년 과학기술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20
18.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금융애로 컨설팅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21

03

홍보 및
판로지원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24
2. 2019년 사회적기업 입점역량강화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25
3. 2019년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 서울산업진흥원	127
4.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129
5. 2019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중소기업유통센터	130
6.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0
7. 중소수퍼 협업화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1
8. 2019년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3
9. 2019년 중소기업명품마루 업체선정 / 코레일유통	144
10.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6
11.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7
12. 협동조합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8
13.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 중소벤처기업부	149
14. 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0
15. 공공시장 진출전략 강화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1

04

기타 인증 및
지정제도

1.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154
2.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157

05

온라인
쇼핑몰

1. e-store 36.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2
2. 함께누리 / 서울산업진흥원	164
3. 경기행복샵 / 경기테크노파크	166
4. 경기사이버장터 / 경기도	168
5. 강원곳간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70
6. 강원마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72
7. 원주몰 / 원주시	174
8. 인제몰 / 인제군	176
9. 홍천몰 / 홍천군	178
10. 하늘다음태백 / 태백시	180
11. 와이팜 / 세종특별자치시	181
12. 농사랑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83
13. 따숨몰 / 충청남도	185
14. 당진팜 / 당진시	186
15. 다채몰 / 대구광역시	188
16. 사이소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90
17. 포항마켓 / 포항시	192
18. 봉화장터 / 봉화군	193
19. e경남몰 / 경상남도	195
20. 거시기장터 / 전라북도	197
21. 순창로컬푸드 / 전라북도	199
22. 남도장터 / 전라남도	200
23. e제주몰 / 제주특별자치도	201
24. 아임쇼핑몰 / 공영홈쇼핑	203
25. 아임스타즈 / 중소기업유통센터	205
26. 무한상사 /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213
27. 녹색나눔 / 농업회사법인 농터(주)	215
28. 스물세그루 / 경북자활광역센터	217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1
자금지원



01

자금지원

근로복지공단

1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사업주가 지금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일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명까지만 지원)
 -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 선원법상 선원은 '19년 선원최저임금(2,153,72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59만원이하 지원
 - * 보수액 :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금액

-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 단, '19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2 2019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공동사업

사업개요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곳

구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택1)	① 조합원 15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②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동일반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전국규모화 사업	• 전국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 자율사업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	•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등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9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체인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필수

지원한도

구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공동일반	공동장비
일반형	1억원, 80% 이내	1억원, 70% 이내
선도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체인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1) 선도형·체인형은 각각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최대 5억원

2)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공동일반, 공동장비 별도 신청 불가

신청 및 접수

■ 2019년 2월~10월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구분	1차	2차	3차
신청,접수	3.4(월) 09:00~3.20(수) 18:00	4.1(월) 09:00~4.19(금) 18:00	5.1(수) 09:00~5.20(월) 18:00



문의처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협업지원실 042-363-7724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5
홈페이지 www.semas.or.kr



3 2019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판로사업

사업개요

- 다양한 판로분야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수혜 조합

* '19년 공동사업의 경우 '선정통보' 조합을 기준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순	지원분야	지원 규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백만원)	보조비율 (%)
1	필수판로교육 * 2~5번 분야 신청조합은 수료 필수	100명	필수	• 판로교육 및 멘토링	-	100
			선택	• 품평회(선정평가)		
2	SB광고	12개	선택(택1)	• 광고영상 제작 • 추가송출	5	90
			필수	• 방송송출	-	100
3	소셜커머스	50개	선택	• 온라인콘텐츠 제작	4	90
			필수	• 전용관 입점 및 V-커머스	-	100
4	해외진출	10개	필수	• 해외진출 컨설팅, 수출교육	-	100
				• 해외 판촉전 및 현지 바이어 상담 - 2개 국가(중국, 베트남)	14	90 이상
5	판촉전	40개	필수	• 대형유통망 판촉전 입점	-	100

* 분야별 복수 지원 가능

* '선택' 부분 단독신청은 불가하며 '필수'와 동시 신청하여야 함

지원규모

- 23억원 내외 (500건 내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9년 4월 19일(금)~5월 7일(화) 10:00까지
- **보완기간** : ~'19년 5월 9일(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사업신청(체크리스트, 신청서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 증빙서류 원본은 선정통보 후 우편제출(선정되지 않은 조합은 미제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공동판로 담당자
042-363-7712, 7151 / coop@semas.or.kr

홈페이지 www.semas.or.kr



4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지원유형별 대상 및 규모

•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중점 사항	제품·서비스 개발·개선 및 시장진출(상품화)	생산력, 기술력 증진, 연계제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참여 자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해당 제품·서비스가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한 경우 *제안서 내 시장진출 현황 작성 必	조합원의 과반수가 만50세 이상, 과학기술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인 경우
규모	총 12개 내외	총 3개 내외	총 4개 내외
지원금	조합당 최대 20백만원	조합당 최대 30백만원	조합당 최대 20백만원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 사업화 소요 직접비용이 아닌 범용성, 운영 경비성 예산은 지원하지 않음.
- 각 유형별 총사업비, 지원항목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로 소요내역을 자유롭게 계획

구분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지원 항목	① 기술사업화 컨설팅 -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법인에 의한 컨설팅 소요비용 - 정부지원금 최대 500만원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 사업화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재료구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시제품 개발 등	(①,②) 일반형 지원항목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 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정부지원금 최대 500만원 추가 인정(기술사업화 컨설팅 포함 최대 1,000만원) - 보유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비용 인정	(①,②) 일반형 지원항목
	[공통]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과제추진비(회의비 및 여비(국내외)· 시내교통비 등),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 인건비는 현물자부담으로만 인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컨설팅, 개인 위탁개발은 지원하지 않음.		
우대 조건	• (인적구성) 경력단절 여성과학 기술인,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이거나 이사장인 경우 • (자부담 비율) 현금자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	• 일반형 우대조건 • (매출규모) 최근 2년간 매출액 규모가 큰 경우	• (매출여부) 최근 2년간 매출이 있는 협동조합 •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 유공자가 조합원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자

〈참고. 지원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예시〉

①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정보활동비)

- 기술·특허·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록비는 지원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매, 전산처리, 시험설비 제작,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 위탁, 프로그램/플랫폼 위탁개발 등

③ 생산 및 품질강화

- 국내외 전략 시장 내 매출처 영업전략을 위한 시장분석 등 전문 컨설팅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기자재 구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협동조합 일반 홍보 브로슈어는 지원 제외) 등

■ 지원기간 : 2019년 협약체결시~11월 15일 까지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공통) 아래 중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단, '고경력형'의 경우 아래 표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형〉

-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인 협동조합
-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 이거나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④ (고경력형)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 상세내용은 [참고2]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 신청제한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일반형>, <고경력형> 수혜 이력(1회)이 있는 협동조합은 <심화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28일(목)~4월 8일(월)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제출처 : leeji@wiset.or.kr)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5
홈페이지 www.setcoop.net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5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사업개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중심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협동 경험 공유, 시설·자원연계, 기술 협력 등 기술기반의 상호 비즈니스 성장기회 마련
 - 과학기술 역량의 융합·응용으로 협의회, 구성원, 지역 등의 동반 성장 기대

지원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희망하는 그룹
 - 단, 동일사업으로 타 부처/기관에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신청자격
 - (신청단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 최소 3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
 - * 협의회 구성의 50% 이상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거나, 5개 이상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포함된 협의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준, [붙임 1] <신청자격 상세기준 안내> 참고
 - 반드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 후 신청 가능(사전문의 필수)
 - (주관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사업비 집행·관리 및 지원사업 총괄 담당
 - (참여기관) 법인자격을 기관 및 기업 (개인자격으로 참여 불가)
 - 민간기업, 대학, 사회적경제 조직 등
 - 참여기업 법인 대표자 명의의 참여 확인 必
 - 단, 협의회 구성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 연구단 등의 단위에서 참여 가능(참여 단위의 책임자 확인 必)
 - * 신청서 內 판단에 필요한 현황 기재
 - ex. 부설센터, 연구단,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등

지원내용

- 협의회 활동 계획에 따른 소용비용 지원
 - 신청서 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 소요계획에 따른 지원
 - ※ 협의회 일반 운영비는 지원 제외
 - 3개 유형 중 1개를 택하여 응모
 - ※ 협의회 활동 목적이 유형간 중첩되는 경우 대표활동을 중심으로 유형 선택

유형	내용 및 구성		비고
연합회 (프랜차이즈) 추진형	(내용)	• 구성원 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연합회(프랜차이즈) 설립 구체화 (전략수립, 법률적 검토, 교육,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협동조합만 참여가능
	(구성)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간 구성	
과학기술 관련 자원 공유형	(내용)	• 과학기술 관련 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의 자원(장비, 시설, 기술 등) 공유를 통해 공동사업 개발 등 시너지 도출	자원공유내역 제시
	(구성)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과학기술 관련 기관/기업	
과학기술 기반 지역사회 혁신형	(내용)	•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지역사회문제, 중소기업지원 등)를 기반으로 협의회를 통한 상생 협력체계 마련	동일지역 70% 이상 소재
	(구성)	• 소재지역 내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과학 기술 관련 기관/기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4월 25일~5월 23일(목) 17:00 까지

※ 신청기간 내 도착 완료건만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mkbok@wiset.or.kr

주요일정

구분	내용
• 공고일~5.23(목)	신청접수
• 5월 5주	요건 및 선정평가(발표평가)
• 6월 1주~6월 2주	선정 공고 및 협약 진행
• ~10월	사업진행
• 11월 초	성과 공유회 개최, 결과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6411-1073 / mkbok@wiset.or.kr
홈페이지 www.setcoop.ne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단위 : 억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비R&D	285	1년 이내	5	'19.3월	'19.4월	'19.4~5월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 단, 제주지역 Free-Track 지원한도 최대 10억(지방비)까지 가능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5억원 (국비 167억원, 지방비 11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19.4~'20.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341	1,669	3,010
대구	1,341	2,075	3,416
광주	1,341	898	2,239
대전	1,341	-	1,341
울산	1,091	-	1,091
세종	478	259	737
강원	1,091	991	2,082
충북	1,091	255	1,346
충남	1,091	2,467	3,558
전북	1,841	375	2,216
전남	1,091	-	1,091
경북	1,841	789	2,630
경남	842	1,018	1,860
제주	842	1,000	1,842
합계	16,663	11,796	28,459

지원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4.08.(월) 09:00~2019.4.15.(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4.09.(화) 09:00~2019.4.1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명	문의전화	주 소
부산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대구	053-818-959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광주	062-604-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전	042-864-4271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울산	052-248-5765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033-258-2653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충북	043-278-2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	041-415-21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전남	061-399-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	053-818-950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055-259-34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제주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2019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구현수단)을 통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획득 또는 유효한 인증서 보유 기업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 (업종공동서비스과제)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2개사 이상),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화과제)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 (업종공동서비스과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이내	65%이내	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자유응모
업종공동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이내		자유응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 기획기관 참여방법 : ('18년 사전매칭 필수 → '19년 선택적 참여)
- 비즈니스 모델 평가 강화 : (1단계) 기술성평가(BM 기술구현 가능성 위주 평가) → (2단계) BM평가 (비즈니스 모델 심층 평가)
- 평가체계 개선 : 평가방법/기준 개편 및 사업계획서 항목 간소화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 116.5억원(R&D 지원)

■ 특허청 : 5.6억원(IP-R&D 전략 지원)

* '18년 지원현황 : 신청 326개 과제중 제품서비스화 23개, 신규서비스창출 11개, 업종 공동서비스 11개 총 45개 선정지원 (예산 83억원)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 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제출서류 : 평가단계별(신청·접수단계 / 대면평가단계)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 신청기간 : '19년 3월 20일(수)~4월 8일(월) 18:00까지



문의처
홈페이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8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 1월~12월
- **지원대상**

구분	내용
식품	「식품위생법」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협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거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신청 및 접수

- 해썹 인증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HACCP 인증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문의

- (식품)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축산물)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구분		주소	담당부서
서울청	식품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Tel 02-2640-1385 / Fax 02-2640-1631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Tel 02-2640-5019 / Fax 02-2640-1367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청	식품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Tel 051-602-6157 / Fax 051-602-6246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Tel 051-602-6137 / Fax 051-602-6251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청	식품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Tel 02-2110-8039 / Fax 02-2110-0805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Tel 02-2110-8057 / Fax 02-2110-0808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청	식품·축산물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Tel 053-589-2737, 2741 / Fax 053-592-2710	식품안전관리과
광주청	식품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Tel 062-602-1408 / Fax 062-602-1500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Tel 062-602-1474 / Fax 062-602-1470	농축수산물안전과
대전청	식품·축산물	대전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34, 8726 Fax 042-480-8740	식품안전관리과



홈페이지 www.mfd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 소상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업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지원내용

-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과제기획지원) 과제기획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 과제 검토 등 지원
 - (과제수행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개발비용 지원

< 과제유형 >

구분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공정개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지원항목 >

지원항목	주요내용	지원한도
인건비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단,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2,000만원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3,000만원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3,000만원
기술서비스 활용비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총계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신청 및 접수

■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접수

구분	제출처	비고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문의처
홈페이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042-363-7913, 7918
www.semas.or.kr

(재)예술경영지원재단

10 2019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영 안정화

지원대상

-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분야 3년 미만 사회적경제 조직

- 사업자 등록증 보유 필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미인증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향후 임팩트 투자 성사 시 법인전환이 가능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자격박탈 등 조치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자금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구축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 (맞춤형 인큐베이팅 지원) 기업 사업 모델 진단을 통한 맞춤형 밀착 지원
- (임팩트 투자유치대회) 지원사업 최종단계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포상 및 민간 자금유치 연계 지원 (포상금 총 2천 만원 예정)

* 지원사업의 효과 증대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센터-선정기업-인큐베이터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운영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란?

기업의 창업 이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컨설팅, 멘토링 등과 함께 공간, 설비 등 하드웨어 지원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엑셀러레이팅이 주로 성장·성숙기 기업 대상이라면, 인큐베이팅은 보다 초기 기업(창업 이후 3년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가능 사업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 지원
-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제품 제작(양산), 유통 및 판로 개척 등

〈예시〉

-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실행
- 신규 사업 및 신상품 개발·실행
- 신규매출처 발굴
- 사업 성장을 위한 협력구조 개발
-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제품 분석 등을 통한 마케팅 개선방안 수립
-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및 상품 유통
- BI 및 CI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브랜딩 등

※ 예시는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며, 예시 외 사업도 신청 가능

※ 선정 후 기존 제출안은 협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단순 예술작품 창·제작, 단순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계획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규모

- 10개 내외 기업, 기업 당 지원금 최대 5천만 원(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 = 지원금 90% + 자부담금액 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1차 지원금 교부 이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 여부 결정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2019년 5월 10일(금) 17:00
-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사회가치창출팀

전화 : 02-708-2240 / 이메일 : consulting@gokams.or.kr

홈페이지

www.gokams.or.kr



농림축산식품부

11 20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을 의미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 각 시도 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31-8084-9564
홈페이지 www.mafra.g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모델 발굴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역 내 먹거리 관련 다양한 우수활동사례와 신규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

지원대상

-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조직,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구분	사업모델 발굴		푸드플랜 역량강화
	우수 활동사례	신규 사업모델	민간활동지원
공모주제	현재 운영 중인 먹거리 관련 활동사례	먹거리 관련 계획수립 또는 준비단계 사례	푸드플랜(로컬푸드) 확산 위한 민간활동
지원내용	컨설팅, 운영, 홍보 지원 (사업 규모별 3~5천만원/보조 100%)		사업경비 지원 (2~3천만원/보조100%)
선정규모	분야별 각 3개소 내외		10개소 내외

* 먹거리 사례 범위

- 생산·유통·소비 : CSA, 농산물 크라우드 펀딩, 로컬푸드 신규 유통채널 등
- 복지·건강 :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제공,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 환경 : 음식 폐기물 활용 신규사업, 푸드마일리지 저감 방법 등
- 기타 '푸드플랜'에 포함되는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www.baroinfo.com) 사이트 신청접수
* 바로정보 → 고객센터 → 참여광장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 접수기간 : '19.4.17(수)~5.31(금)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061-931-1014
홈페이지 www.at.or.kr



13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해외진출 고도화 패키지
 - ① 패키지1 : 무역 교육 및 이동 KOTRA 통한 수출역량강화
 - ② 패키지2 : 수출전문위원 지정 및 바이어 매칭 통한 수출 첫걸음 지원
 - ③ 패키지3 : KOTRA 해외무역관을 이용한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 기타 : 개별수요에 맞춘 선택형 서비스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아마존 US 입점 인큐베이팅, 아트 콜라보 매칭지원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문 참조

* 사업설명회 : 2019년 2월 28일 (목) / KOTRA 본사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및 세미나실



문의처 KOTRA 사회적가치실 02-2460-3492, 3494 / easy07@kotra.or.kr
홈페이지 www.kotra.or.kr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14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경제주체 육성

지원대상

- 전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전국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내용

-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위한 실전형 교육비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초기사업비(집수리, 시설관리, 문화·예술, 복지, 기획 등)
- (교육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기 사업비)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마을축제 기획·운영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초기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분야

- 전체 예산인 약 3억원이 소진될 때 까지 건당 최대 500~1,000만원, 지원센터 당 최대 4팀선정(신청은 센터당 월별 2곳 이내 가능)

구분		사업비	비고
교육비		팀당 500만원	- 주체 : 센터 -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교육
사업비	초기 사업비 (축제, 행사, 홍보, 등)	팀당 500만원	-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 내용 : 소모성 행사, 홍보비용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 대회 연계	팀당 최대 1,000만원	-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 내용 : ①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경진대회와 연계, ②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③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초기사업비 등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가능, 단 사회환원금이 지원금의 20% 이상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 가능여부는 지원기구와 협의 후 세부사업 계획 제출 (자산취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사용불가)
	초기사업비 (시제품 제작 등)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이후 자금소진 전까지 수시접수

-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검토 후 센터 의견서(지원 신청서)를 첨부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 올해부터 지원센터별로 월2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체 교육 및 경제주체 사업건수가 월2건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에서 선별하여 신청

■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 검토를 거쳐 LH지원 기구에 직접제출 가능

■ (접수방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메일(hellourban@lh.or.kr) 제출



문의처 LH도시재생지원기구 042-866-8305
홈페이지 lh.or.kr



15 2019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Death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지원대상

- 창업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등을 위해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최대 7억원/ 사업화 자금 최대3억원+창업성장 R&D 자금 최대4억원)
- 성장지원서비스 :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 수출, 제품개선 등 서비스 지원 (최대 3억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04.15 (월)~2019.05.02 (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신청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도약부 042-480-4345, 4336
홈페이지 www.kised.or.kr



16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사업개요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안전, 복지, 고령화, 지역격차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 해결

*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이하 'DSI') :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EU, 2014)

지원대상

- 민간단체·법인*, 교육기관(학교),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디지털 사회혁신(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개인사업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을 포함한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 및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의 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것을 권장(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지자체 단독 제안은 불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모분야	공모대상	총 예산	과제 수(지원금액)
1. ICT 착한상상 (과기정통부)	①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개선	민간, 기관, 지자체 등	2.5억원	4개 내외 (과제당 6천만원 한도내)
2. 지역문제해결 (행안부)	① 정보기반격차 완화 ② 서비스격차 완화 ③ 자유 분야		6.4억원	8개 내외 (과제당 8천만원 한도내)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05.15.(수)~06.17(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제안서 propose.nia.or.kr
- 방문(1일간) : 6.17(월)10:00~16:00까지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본원 1층 제안서접수실 직접등록



문의처 디지털사회혁신팀 053-230-1304, 1314
홈페이지 www.nia.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 2019년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사항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직접대출)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조 9,500억원

융자대상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비고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직접대출)	
	성장 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경영 안정 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소상공인긴급)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특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 지역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해당 지역에 한해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사회적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직접대출)	
	성공불용자	(성공불용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직접대출)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만39세이하) 고용기업 또는 최근1년 이내 청년 고용기업	
		(청년특별1) '19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 '19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각 자금별 선착순 마감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19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019.01.10.부터 적용)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연 2.77%
	성장촉진자금	연 2.57%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2.37% (대리대출에 한함)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경영) 연 2.77%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77%
		(소상공인간접) 연 2.50%(고정금리)
		(사업전환) 연 2.37%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 (긴급경영) 포함 자진피해 1.50%(고정금리)
	사회적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연 2.57%
	성공불용자	(성공불용자) 연 2.5%(고정금리)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 연 2.57%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 연 2.37%
	청년고용특별자금2	(청년고용) 연 2.17%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협동조합 전용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성공불용자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협동조합 전용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용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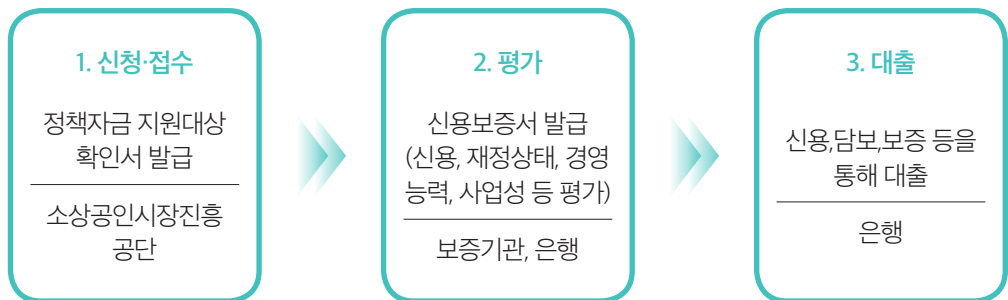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은행(18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응자절차

■ 대리대출(공통)



■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협동조합전용자금, 성공불용자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01 » 일반경영안정자금(용자)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02 » 청년고용특별자금(용자)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4,475억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03 »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3,000억원)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04 >> 성장촉진자금(융자)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동 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18. 5년 이상 → '19. 3년 이상)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05 >> 소공인 특화자금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8 2019년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사업개요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지원대상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신청 및 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별표는 201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가능

※ 공고위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알림소식 → 훈련·예규·고시·공고 → 공고 → 공고번호 '제2018-447호' 검색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01 >>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지원구분** :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지원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구분	내용
청년전용 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사업 연계자금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클라우드 펀딩 성공 등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참여 기업, 중소기업
-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용자범위

구분	내용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 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화사업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02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사업개요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투융자 복합금융 구분

구분	내용
이익공유형 대출	• 저금리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이자(성과배분) 수취 -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성과배분이자 부담 없음
성장공유형 대출	• 전환사채(CB)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됨
스케일업금융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증권 인수

- 신청대상

구분	내용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 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

지원내용

1. 이익공유형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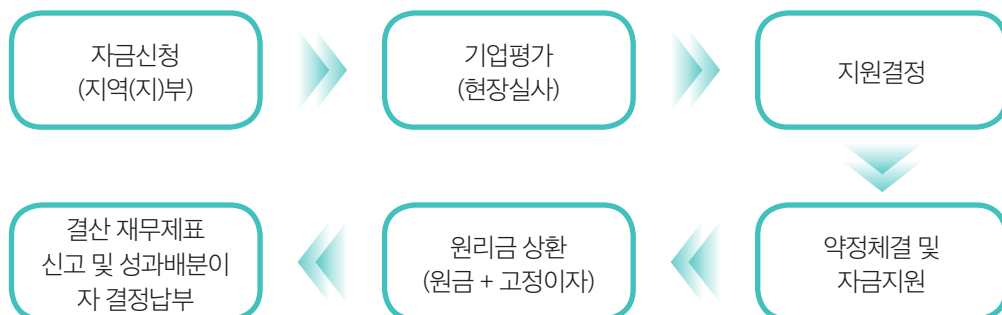
- 지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일반 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지원
-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금과 고정이자(고정금리 0.5%)를 상환하고, 대출 이후 3년간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이자(영업이익 합계액의 4.0%) 상환

■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
지원기간	• 5년 이내(3년거치, 2년분할상환),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6년 이내(3년거치, 3년분할상환)
이자율	• 고정이자 : 0.5% (대출기간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 × 4.0% 단,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의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이자부담 최대한도	• 대출원금의 20%까지 (고정 및 성과배분 이자의 합계액)
성과배분이자 적용기준	• 적용 재무제표 :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 적용 결산기 : 대출일 이후 3년간에 속하는 결산기 • 적용 기간 : 대출일 이후 3년간에 속하는 결산기 경과 후 부과 단, 대출초년도와 거치기간 종료연도는 대출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 회수 - 법인 : 대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날 - 개인 : 대출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최초 도래하는 8월 31일
기타조건	• 필요시 결산 재무제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회계실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대출기간내 조기상환시 위약금 부과, 위약금은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고정이자 및 성과배분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내로 함.

■ 지원절차



2. 성장공유형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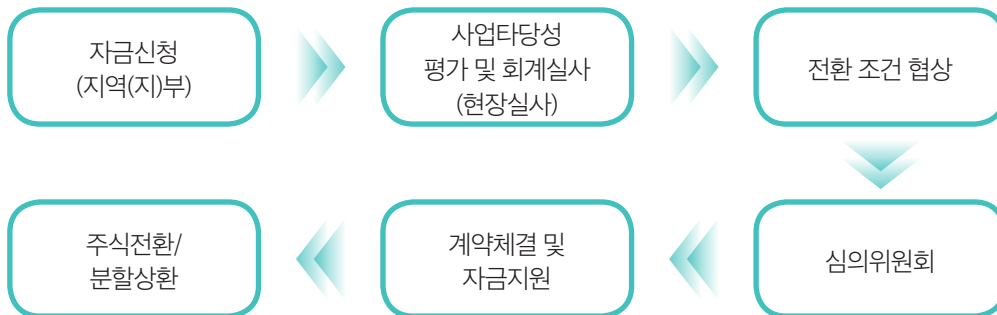
■ 지원방식

- 각 지역(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 성장이익 공유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식으로 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3년 미만	3년 이상
지원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이자율	표면금리 0.2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표면금리 0.5%(단리) 만기보장금리 3%(단리)
지원기간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4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전환주식종류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기간	지원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환권 행사	
전환가격 결정	향후 후속투자 전환가격의 80%	기업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
외부회계감사	지원금액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원연도 포함 3년간 외부회계감사 면제	지원 당해 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수감 필수
기타조건	• 대출기간 내의 임의 조기상환 금지 • 자본금 변동 등 사전동의 의무	

■ 지원절차



0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04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개요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혁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은 업력 제한 없음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지원내용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품 생산비용, 제품 개발 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가능 (단, '산업경쟁력 강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 *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 용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용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의 운전 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05 >> 재도약지원자금

사업개요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대상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융자결정 가능
- <2 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 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 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지원내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단,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중진공 직접(신용) 대출)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지원절차

- (일반, 융자상환금조정형) 자금 접수 후 기업평가, 융자결정, 교육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접수 후 기업평가, 심의(신용회복 및 자금지원), 융자결정, 교육을 거쳐 최종 자금 대출
 - 신청자(기업)가 평가기관 (중진공, 신·기보 등) 을 선택하며, 보증서(신·기보 각 40%) 대출
 -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06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시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횡수제한 적용 예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용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시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항 추가 예외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경영애로 사유〉

-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용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중소기업중앙회

19 중소기업 보증공제제도

사업개요

- 공공기관에 납품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위하여 조달계약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보증공제증권 발급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대기업도 이용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보증 취급범위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을 보증
 - 취급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금보증, 하자보증의 4종
 - 이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요기관 범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 보증한도
 - 업체별 개별보증한도 = 기본보증한도 + 부금보증한도
 - 기본보증한도 : (매출액×일정비율+자기자본×일정비율)×신용등급별 인정비율
 - 부금보증한도 : 부금잔액 × 신용등급별 인정배수

신청 및 접수

- 상담 후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 1899-0098 / www.gbiz.or.kr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 1899-0098
홈페이지 www.kbiz.or.kr(중소기업중앙회) / 바로가기 www.gbiz.or.kr(중소기업보증공제)



20 기술보증지원

사업개요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 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 일반한도 : 기업당 30억원
 - 특별한도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50억원, 우수기술기업 70억원,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지원규모

- 2019년 기술보증 잔액 20.9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4조원 별도)
- '18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1.8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5조원 제외)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1.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가능
2.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 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 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3.접수 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4.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5.심사 · 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6.보증서 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02-799-6984
홈페이지 www.kibo.or.kr



21 신용보증지원

사업개요

-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지원제외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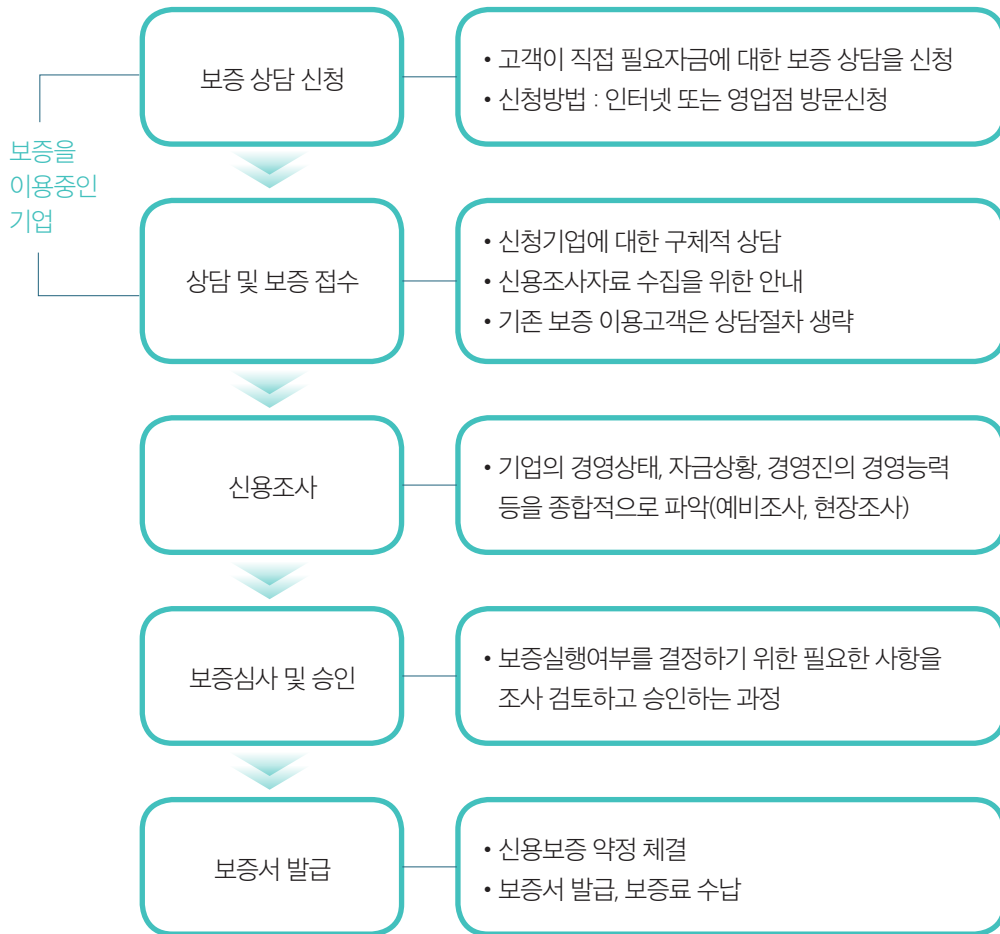
■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다만, 도박 ·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보증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이행보증, 상거래담보용보증

보증절차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kodit.co.kr



22 특화보증프로그램

01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 기준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
(1억원 이하는 매출액 검토 제외)
- 시설자금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범위내

※기보, 재단 거래업체 지원 가능

보증료

- 연 0.5%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보증기간

- 5년이상 장기 운용 원칙(협의 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이내 운용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사회적경제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926
서울동부사회적경제팀	서울동부, 강원	02-2141-3304
경기사회적경제팀	경기	031-230-1528
인천사회적경제팀	인천	032-450-1658
부산경남사회적경제팀	부산, 경남, 울산	051-678-6080
대구경북사회적경제팀	대구, 경북	053-430-4671
호남사회적경제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271
충남사회적경제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08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보증취급기간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홈페이지 www.kodit.co.kr



02 »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가 상시 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주)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주)시행령에서 정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억원

운전자금 한도사정

-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에서 기보 및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보증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사정 생략 가능)

보증료

- 연 0.5%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사회적경제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926
서울동부사회적경제팀	서울동부, 강원	02-2141-3304
경기사회적경제팀	경기	031-230-1528
인천사회적경제팀	인천	032-450-1658
부산경남사회적경제팀	부산, 경남, 울산	051-678-6080
대구경북사회적경제팀	대구, 경북	053-430-4671
호남사회적경제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271
충남사회적경제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08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홈페이지 www.kodit.co.kr
바로가기 goo.gl/s3shkC



03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
- 소매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
(※)소매업 : 협동조합의 매입(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증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운용 프로그램 기준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운전자금 한도사정

- 아래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증신청금액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 ① 최근 1년간 매출액 $\times 1/2$
 - 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times 1/2$
-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보증료

- 연 0.5%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취급부점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팀(대표번호 : 1588-6565)

구분	보증 관할구역 (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사회적경제팀	서울서부, 제주	02-710-4926
서울동부사회적경제팀	서울동부, 강원	02-2141-3304
경기사회적경제팀	경기	031-230-1528
인천사회적경제팀	인천	032-450-1658
부산경남사회적경제팀	부산, 경남, 울산	051-678-6080
대구경북사회적경제팀	대구, 경북	053-430-4671
호남사회적경제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271
충남사회적경제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08

- 보증상담 및 신청방법 : 설명회, 박람회 등 현장상담·신청접수



홈페이지 www.kodit.co.kr



23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사업개요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제외대상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보증의 종류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보증심사방법 :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태 및 자금능력 등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0.5% ~ 2%(재단 및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koreg.or.kr



24 특례보증신용

01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출취급은행

-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대상제외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시행기간** : 2018.02.22~2019.12.31(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 → 신용보증 → 사업자보증 → 특례보증



02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사업개요

-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출취급은행

-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등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 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 보증기간

- (운전자금) 7년 이내
- (시설자금) 대출기한 이내

■ 시행기간 : 2008. 7. 1~별도 통보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홈페이지 www.koreg.or.kr



03 »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사업개요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출취급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은행

■ 대상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대 7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포함 최대 3억원이내)
-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포함 최대 2억원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시행기간 : 2018. 2. 9 ~ 2019. 12. 31.(또는 한도소진 시 까지)



문의처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www.koreg.or.kr

<http://www.koreg.or.kr/sub/info.do?page=020204&num=13>



서민금융진흥원

25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01 » 창업자금

사업개요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 TIP**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연) 4.5% 적용
 -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원, 4.5% 적용
 - ※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02 » 운영자금

사업개요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03 >> 시설개선자금

사업개요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26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개요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 자금용도
 - 부동산 임차보증금/매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대환용자 및 긴급자금) 등
- 대출금액
 - 장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1억원 (3년, 12개월 거치)
 - 단기운영자금 대출 :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2년, 6개월 거치)
- 적용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3월 29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 서류제출마감은 마감당일우편소인까지 인정
- 접수처 : (04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5 SDE타워 3층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문의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부 사회적금융팀 02-330-0710, 0707, 0723
홈페이지 hamkke.org



중소기업중앙회

27 공공구매론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

지원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및 은행심사를 근거로 신용대출
 - 선금수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 및 접수

- 연중수시, 온라인(www.smpp.go.kr 접속)으로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3, 02-2124-3237~9 또는 1666-9988(내선:3)
홈페이지 www.smpp.go.kr



28 매출채권 보험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지연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 및 접수

- 매출채권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가입금액 등에 대한 상담 후 영업점 청약접수



문의처 신용보험부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29 도시재생특례보증

사업개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 마련, 상가 리모델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용자 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

지원대상

-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용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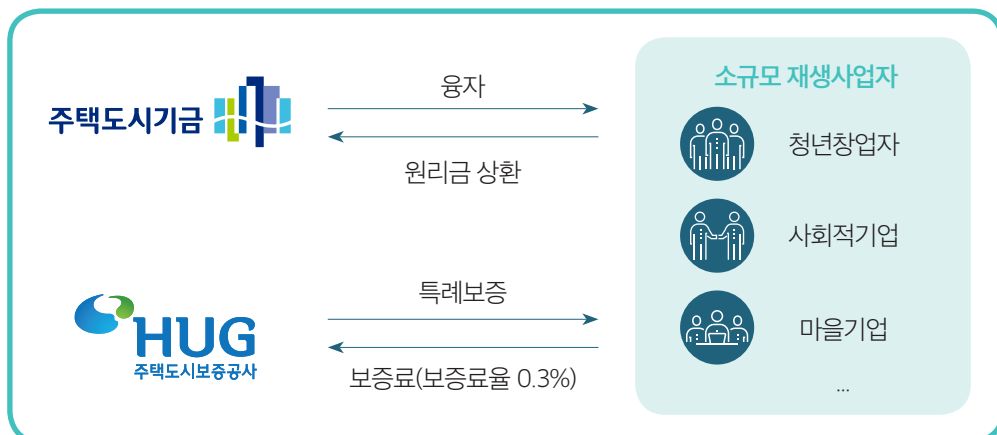
〈수요자 중심형 융자상품〉

- (자금용도)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 (한도 및 이율)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 금리 1.5%

- 보증료율 : 0.3%

$$* (\text{보증료}) = (\text{보증부 융자금액}) \times (\text{보증료율})$$

< 특례보증 지원 구조 >



신청 및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지역별 금융센터

문의처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12~6, 02-6123-8323~6
(담당지역 :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충청, 대전, 세종)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도시금융센터 : 02-6123-8362~6, 02-6123-8372~6
(담당지역 :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도시금융센터 : 051-998-6722~6, 051-998-6732~4
(담당지역 : 경상·전라, 대구·울산·부산·광주, 제주)

홈페이지 www.khug.or.kr

30 사회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융자

01 » 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사업개요

-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등의 부족한 재정,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지원대상

- 임대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사업주(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기간 : 최대 20년
- 융자한도 : 공동주택 (최대 100백만원), 단독주택 (호당 500백만원)
- 융자이율 : 연 2.0~2.8%

신청 및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 및 접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1566-9009
홈페이지 www.khug.or.kr



02 » 사회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사업개요

-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등의 부족한 재정,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주택을 매입하는자(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 융자기간 : 최대 20년
- 융자한도 : 공동주택 (최대 100백만원), 단독주택 (호당 500백만원)
- 융자이율 : 연 2.0~2.8%

신청 및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상담 및 접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1566-9009
홈페이지 www.khug.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1 2019 Coop 기술개발과제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회적협동조합 현장의 핵심·주변기술 등 필요기술 확보와 개발연계 등 애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제안 준비를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서
 - 본 사업을 통한 기술과제 개발사업 제안,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향후 R&D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과제 제안 준비 시 소요되는 자문·컨설팅비 등 제반 비용
 - 지원규모 : 총사업비 14백만원(VAT 포함), 1개 내외 조합 선정 (7백만원~14백만원 범위내)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19. 10. 11~10. 24.(목) 17:00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접수처 / 문의 : coop@ikosea.or.kr / 031-697-7731, 7732
- 제출서류 : 사업공고문 참조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031-697-7731
홈페이지 www.coop.go.kr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0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특허 등의 기업 경영애로를 전화, 지방중기청 사무소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

지원대상

- 전문가상담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 금융 및 보험업(64110~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96111~96999)

지원내용

- **상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에 배치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 **현장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지원분야

- **창업·벤처, 법무·규제 등 12개 분야(아래 참조)**

분야	지원내용
창업	창업절차,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마케팅 디자인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정책자금,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조직개발, 목표관리, 직무분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FTA활용, 바이어발굴, 수출계약 체결 등
기술	특허선행기술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
특허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정보화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 위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후 지원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전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신청접수의 전화번호 참조)
-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www.bizinfo.go.kr/link)
- 방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신청접수의 주소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12월 (토,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

*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문의처 12개 지방청 및 5개 사무소(센터) 비즈니스지원단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사업팀 (02-6205-8122)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mss.go.kr



2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경제·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체질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아래 기업문제 해결 희망기업

구분	지원분야
특화형 컨설팅	미래성장산업, 제조업 서비스화, 新서비스업, 사업전환, 중소기업간 협업,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대응,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정보보안 취약기업 및 기술유출·탈취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 유럽진출기업 대상 EU 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특화형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90% 이내	최대 5개월 (1개월 추가연장 가능, 1회)
규제대응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최대 5백만원		
정보보안 컨설팅	최대 15백만원		

신청 및 접수

- 상반기 2회 접수 (2월, 5월)

신청월	신청·접수기간	신청월	신청·접수기간
2월	2.21(목) ~ 2.28(목)	5월	5.13(월) ~ 5.17(금)

* 화학물질등록 컨설팅은 사전신고 기한(19.6.30)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수시 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상기 일정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접수가 진행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에 공지 예정

신청·접수 문의처 및 관할구역

부서명(소재지)	관할구역
수도권 경영지원처 (서울) ☎(02)3130-1333,4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부권 경영지원처 (대전) ☎(042)281-378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동부권 경영지원처 (대구) ☎(053)320-3116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중소벤처기업부 ☎1357	전국 통합 콜센터



3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경영개선교육·튼튼창업교육 및 방송교육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지원내용

- ①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② 경영개선·전용교육장·튼튼창업창업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창업교육 등을 교육(수행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 *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등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 ③ 소상공인방송교육 : 소상공인방송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방송
 - * 경영교육 예산 중 일부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협동조합, 컨설팅, 시장지원) 콘텐츠 제작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튼튼창업교육프로그램 신설

신청 및 접수

- 2019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 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사업일정

구분	사업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수강	교육비 신청
전문기술교육	2019.1월	2019.2월~	2019.3월~	2019.3월~
경영개선·튼튼창업 ·전용교육장교육 및 방송교육	2019.3월	수시	수시	무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042-481-45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h.or.kr) 042-363-7821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semash.or.kr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2 참조)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 불문)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이수자의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내용

- 이론 및 체험교육(약 20주 과정)

구분	내용	기간
창업 이론교육	온라인(30hr 내외), 오프라인(120hr 내외)	4주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 및 실 경영체험(체험점포)	약 16주
창업멘토링	온·오프라인 분야별 창업멘토링	

■ 연계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보조금)	마케팅·홍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등의 창업비용 일부 지원* (최대 2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자기부담금 조건) * 교육 수료생 중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4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정책자금(융자)	최대 1억원 이내 직접대출 * 교육 수료생(점포체험교육) 대상 개인별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개인별 상이) ** 교육수료일(점포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19. 1. 16(수)~2. 20(수),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042-363-7494~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semas.or.kr



5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어려운 경영여건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연계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컨설팅)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대상(예비창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자 중

- ① 전년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또는 ② 매출액이 2년 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
 - (매출액 20% 이상 감소) '17년(17.1.1.~17.12.31.) 매출액 대비 '18년(18.1.1.~18.12.31.)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7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 (매출액 2년 이상 연속 감소) '16년(16.1.1.~16.12.31.) 매출액 대비 '17년(17.1.1.~17.12.31.) 매출액이 감소하고, '17년(17.1.1.~17.12.31.) 매출액 대비 '18년(18.1.1.~18.12.31.) 매출액이 연속으로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지원내용

■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의 마케팅, 고객관리, 매출증대 방안 등 경영역량 강화와 명장 등의 노하우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역량 Jump-up 프로그램)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진단 및 분석, 위기진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소상공인컨설팅) 2019년 3월 27일~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역량 Jump-up 프로그램) 2019년 3월 27일~19년 4월 9일 18:00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접속
→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작성 완료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 www.semas.or.kr



6 경영컨설팅

사업개요

- 일정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신용보증기금 컨설팅 그룹」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사항을 분석 및 진단·평가하는 동시에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업무.

*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그룹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222명(법인 40개사 포함)의 현직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POOL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지원내용

- 경영전략
 -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및 검토
 - 부분별 목표달성 실행계획 수립 및 검토
 - 기업 경영현황진단 및 경영관리체계 확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 경영진의 경영마인드 제고등
- 인사조직
 - 조직 및 인력관리체계 확립
 - 조직 재설계 및 신인사제도 제정
 - 직무분석 및 성과급 임금체계 확립
 - 급여체계 확립 및 연봉제 수립
 - 인사규정 제정 등
- 마케팅
 - 시장분석 및 목표시장 공략기법 제고
 - 상품기획 및 브랜드 구축
 - 고객 및 영업관리체계 확립
 - 영업능력 강화방안 수립 및 영업마인드 제고
 - 신상품 시장성 검토 및 판매방안 수립 등

■ 재무관리

- 재무내부통제 및 재무관리 업무 정형화·통합
- 효율적이고 적당한 재무회계 정보산출
- 원가관리시스템·관리회계시스템 확립
- 자금관리시스템 분석 및 개선 등

■ 생산관리

- 설계·제조원가 혁신 및 표준·목표원가 관리
- 생산손실개선 및 낭비제거·공정관리 체계 개선
- 최적 생산통합시스템 구축 및 납기관리 혁신
- 품질관리시스템 및 재고관리시스템 개선
- 설비배치개선 및 설비생산성향상 등

■ 정보화

-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 ERP 등 기 이용중인 정보화 시스템 활성화 등
- 단, 정보화 프로그램 신규설치 및 구입제외

■ 가족기업 경영컨설팅

- 가족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한 장수 DNA 육성
- 현재 가족기업의 수준 진단
- 가족기업의 승계전략, 지배구조 등 경영시스템 구축

※ 신용보증기금 내부 기준에 의거 신청기업 특성, 컨설팅 과제 등에 따라 총 컨설팅 비용의 70%~100% 지원

신청 및 접수(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플랫폼 (<https://www.kodit.co.kr/consult/consult/busiConsultView.do>)

※ 컨설팅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고 있어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컨설팅 수수료 지원은 같은 기업당 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053-430-4694
홈페이지 www.kodit.co.kr



7 신용관리 컨설팅(CRC:Credit Risk Control)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신용도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리고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신용위험관리 기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신용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컨설팅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신용등급 향상을 목적으로 거시환경, 산업환경, 거래처 분석, 경쟁기업 분석, 신용도 분석 등 5단계 Frame

[STEP1] 거시환경분석 - [STEP2] 산업환경분석 - [STEP3] 거래처 분석 - [STEP4] 경쟁기업분석 - [STEP5] 신용도분석



컨설팅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 현장방문 상담 → 컨설팅 일정협의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

※ 컨설팅 수수료 : 무료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FAX 0505-071-4652 또는 mhch3111@kodit.co.kr 송부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053-430-4694

홈페이지 www.kodit.c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화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자율형	지속성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심화과제
	공동	2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5개 기업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 지원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자율형	지속성장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6개월
	공동			

신청 및 접수

■ 기간 : 공고일~3. 20(금)까지

※ 이번 차수 신청은 자율형(지속성장,공동)에 한하며, 표준형 컨설팅은 별도공고 예정

■ 방법 :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크지원팀 031-697-7852, 7854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9 디자인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업개요

- 디자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

지원대상

- 창업 2년차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 디자인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 신청자격

- ①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문제해결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 ② 디자인기업 : 상품 개발 인력 3인 이상 보유하며 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즈니스 추진 중인 기업
- ③ 디자인기업은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지원불가

지원내용

- (진단·컨설팅) 경쟁기업·기술·시장 및 사용자를 분석하여 상품 컨셉 기획 및 개발 전략 도출(6개사, 3개월 내외)
- (인력지원) 신규 디자이너 채용을 위한 인건비 보조(15개사, 약 5개월간 인건비의 80% 이내 지원)
- (서비스·BM개발) 제품디자인·설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2개사)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4.16.~2019. 5. 17, 17:00까지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양식 접수, 별첨 작성후 메일발송
 - 양식교부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홈페이지 또는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 www.kidp.or.kr → 기업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Social@kidp.or.kr (접수확인 031-780-2263)
홈페이지 www.kidp.or.kr



10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경험과 지식을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학습과 현장 활동지원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험이 있거나 향후 문화예술교육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체의 경우 2인까지 참여)

지원내용

- 상반기 : 주 1회(3시간), 총 16회 참여 및 회차별 미션 수행
- 하반기 : 주 1회(3시간), 총 16회 참여 및 스스로 R&D 수행(회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자 스스로 R&D : 상반기 함께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초 조사 및 연구활동 (콘텐츠 기획, 시장조사, 사례 분석 및 사업아이템 타당성 조사 등)

지원규모

- (상반기) 25명 내외 / (하반기) 15명 내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3. 28.(목) 오전 9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snkenshin7@arte.or.kr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시민교육팀 담당자 02-6209-5994
www.arte.or.kr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1 과학기술 기반 협동조합 설립 집중 과정

사업개요

- 과학기술 기반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전문 교육·맞춤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 확대 및 활성화

지원대상

- 과학기술 기반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협동조합 설립 희망팀
 - ※ 최소 2인 이상, 이공계 인력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팀
 - * 개인과 법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과정 참여 필수

지원내용

- 협동조합 전문가 집단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협동조합 설립 집중 교육 및 팀별 맞춤형 컨설팅
 - ※ 프로그램 운영기관 : 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KCDC)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9년 6월 7일(금), 16시 접수분 까지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leejy@wiset.or.kr) 접수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5
홈페이지 www.setcoop.net



12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01 >>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기본형)

사업개요

- 협동조합 대상 분야별, 대상별 심화 교육을 설계·운영하여 부문별 전문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대상

■ 교육기관

- 협동조합 및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전담인력: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및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 소속 협동조합이 3개소 이상인 업종·지역별 협의회 조직
- 교육과정은 협동조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며 운영지침의 교육과정 구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행정 실무담당자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함

※ 우대사항: 사회적경제 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연합회, 협의회, 네트워크(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능

■ 교육생: 협동조합 조합원, 임직원 등

지원내용

- 일반교육: 협동조합 직원·조합원 및 임원·이사장 대상으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인사, 회계 등 협동조합 운영교육
 - 교육내용: 협동조합 기본과정, 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인사·노무, 조합·조직관리, 회계·세무, 경영진단 등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 교육시간: 8시간 이상

■ **업종·특화교육** : 협동조합의 업종,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직무역량 강화 등 특정 업종 및 사업 중심의 내용에 대한 교육

- 교육내용 : 업종별 직무 특화교육, 유사·동종업종 간 연계 교육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편성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신청 및 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2019. 4. 12.(금) 18시까지
- **교육생** : 교육기관별 모집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02 »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전국형)

사업개요

- 협동조합 대상 분야별, 대상별 심화 교육을 설계·운영하여 부문별 전문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대상

- 협동조합 및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전담인력 :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및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이고,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 ※ 우대사항 : 사회적경제 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연합회, 협의회, 네트워크(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상	지원규모
대상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필수)하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균등한 경제관념 수립을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전반	청소년 (예비)조합원	1개소/ 30백만원
	임원	조합 설립 미션, 목적 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미션제시,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임원 및 대표자 경영진단 교육 전반	협동조합 임원, 연합회(협의회) 등 대표자	1개소/ 10백만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2019. 4. 1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2019.4.12.(금) 당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13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사업개요

-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 심층컨설팅이 가능한 협동조합 전문가(코디네이터) 양성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분야 종사자(3년미만)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교육 실시

신청방법

- 협동조합 홈페이지-공지사항(www.coop.go.kr)에 추후 공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3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14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사업개요

- 고품질 전문상담과 방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경영현안 해결 및 사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 협동조합 조합원, 임직원 등 실무자 및 설립희망자

지원분야

- 법무·법률,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3개 분야

지원내용

- 전문상시상담기관 : 협동조합 운영 상 발생하는 법무/회계·세무/인사·노무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상담·자문(온라인·유선 상담)
- 현장코칭 : 온라인 상담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코칭 실시

이용방법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상시상담 문의 작성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031-697-7735
홈페이지 www.coop.go.kr



15 2019년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회적 영향력과 협동조합 적합성, 사업 확장성이 높은 사업모델 발굴·기획·전파를 통한 협동조합 모델 확산

지원대상

- 개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네트워크 등 관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 조직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 유관 기관 포함

지원내용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잠재후보군 대상 홍보, 대상 발굴 및 조직화, 사업모델 및 프로세스 설계, 가이드 등 제작, 설립/전환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 유형/분야별 맞춤 지원(예정)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요망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6~7월 중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33 / creative@ikosea.or.kr
홈페이지 www.coop.go.kr



16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사업개요

- 교육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의 온라인 제공

지원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 및 일반인 등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교육, 운영지원교육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제공
- 세부교육내용 : 협동조합 소개, 협동조합 기본과정, 협동조합 설립안내, 해외교육, 청소년 교육, 조합원 교육, 협동조합 업무지침, 경영공시, 비즈니스모델과 마케팅 전략, 공공구매의 이해와 활용, 사회적 가치

이용방법

- www.coop.go.kr → 교육 → 온라인교육

※ 별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3
홈페이지 www.coop.go.kr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17 2019년 과학기술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지원

사업개요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일자리 확장

지원대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현황서 등록 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SET COOP)에 등록된 협동조합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tcoop.net)<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목록> 기준 (미등록 협동조합은 설립현황서 작성록(응모일 전) 후 참여 가능)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예비설립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준비 중으로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보유한 팀 (2인 이상)

지원내용

- 총 20개 내외 제품서비스
 - 신청기업단 1개의 펀딩 프로젝트 지원
 - 응모시 펀딩유형(모의형, 후원형, 대출형)을 선택하여 컨설팅과정에서 유형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전문가컨설팅 : 아이템별 프로젝트 설계지원
 - 사진영상제작 :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 설립스토리, 보유기술 등
 - (사진) 팀당 1건, 펀딩 탑재용 10컷
 - (영상) 팀당 1건, 1분 이내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만 지원)
 - 프로젝트 페이지 제작 :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페이지 제작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9년 8월 31일(토)까지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eejy@wiset.or.kr) 접수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5
홈페이지 www.setcoop.net



18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금융애로 컨설팅

사업개요

- 사업성 및 성장성 있는 과학기술협동조합에게 자금조달(보증, 융자) 접근성 제도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1:1 금융컨설팅

지원대상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10팀 내외 (팀당 20분)

지원내용

- 참여프로그램
 - 유망서비스 부분 협동조합 희망보증
 - IT, SW 등 유망서비스 부분 협동조합
 - 희망보증 심사항목별 구비 컨설팅
 - 협동조합 희망보증 심사사례 및 자금력 확보를 위한 개별 컨설팅
 - 협동조합 대상 상생협력대출
 - 신청협동조합 상생협력대출 신청요건 검토
 - 기업신용등급, 재무관리 컨설팅
 -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대출요건 완화 검토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11. 18.(월) 15시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hlm@wise.or.kr접수서류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02-6411-1063
홈페이지 www.setcoop.net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3

홍보 및 판로지원



03

홍보 및
판로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사업개요

-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지침 및 매뉴얼배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관련정보 제공(주요사업, 품목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 공공기관별 구매실적/계획을 집계하여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우선구매제도 활용도 확산

사업내용

-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범위
 -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우선구매 절차

수요발생

구매대상
제품 확인제품 구매방법
결정

제품 구매

상품물 등록

- e-store 36.5+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등록
 - e-store 36.5+ 미입점기업인 경우 “www.sepp.or.kr” 접속 후 맨 하단의 “입점사 회원가입”을 통해 입점 추진
- ※ e-store 36.5+ 입점 승인 후 상품 등록 가능(입점 및 상품등록 문의사항: 070-5226-1102)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4, 7746
홈페이지 www.coop.go.kr



2 2019년 사회적기업 입점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발굴·개선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육성사업 창업팀*

· '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 우대사항

- 직접 생산한 상품(제품·서비스)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우
 - 직접생산확인서 제출
- 판매실적 및 특허·인증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의 입점·판매실적 및 상장·특허·인증서 등 각 종 증명자료 제출

※ 제외대상

- 직접 기획 또는 생산하지 않고 타사의 제품을 단순 유통만 하는 상품
- 본 사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당해년도 상품 개선 관련 후원기업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 지원 제한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제외하지 아니함

지원규모

- 기본개선상품 50개 내외 (1개 기업 당 1개 상품)
- 중점개선상품 30개 내외 (1개 기업 당 1개 상품)

지원내용

- ① (교육·MD상담) 참여기업이 입점을 희망한 유통채널 및 SE벤더에서 상품표시 표기, QA인증,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 ② (상품 기본개선) 사진촬영 지원 및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 (사진 촬영 지원)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 사진 촬영 지원
 - (사전진단 컨설팅) 상품 개선점 도출 및 개선 코칭
 - 상품별 고객분석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개선 전략 수립
 - 상품 분석에 따른 상품 패키지 및 홍보 디자인 중심의 개선점 도출
 - 도출된 과제 및 MD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중점개선' 과제 확정
- ③ (상품 중점개선) 상품 개선점 도출 및 개선 코칭
 - (개선사항) MD상담 및 사전진단 컨설팅 결과 확정된 개선과제 실행
 - (개선분야)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필수 개선사항이 있는 기업은 유통채널입점 필수사항 개선 진행, 이외 기업은 디자인 개선 지원
- ④ (연계·홍보) 참여신청 유통채널 입점 연계 및 기획전·특별전 개최 지원
 - 사업 참여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온라인 기획전 개최' 지원
 - 스토어 36.5(사회적기업제품 판매장) 전국 99개소 매장 입점 연계 및 판촉* 지원
 - 소비자 체험단 및 시식회 등 상품 프로모션 지원
 - e-store36.5+(온라인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에 상품 입점 연계
 - 「사회적경제기업 독자적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선정 우대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유통채널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9-35호 참조(www.socialenterprise.or.kr) → 알림마당 → [공고] 사회적기업 독자적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 '19년도 참여기업 모집 3~4월 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사회적경제상품 관련 대형유통채널 기획전 등 내·외부 유통채널 상품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홍보 기회 및 소비자 접점 제공
 - 사회적경제상품 관련 대형유통채널 기획전 등 내·외부 유통채널 상품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홍보 기회 및 소비자 접점 제공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공고일~'19.4.11.(목)
- 접수방법 : e-store36.5+ 온라인접수
 - www.sepp.or.kr → 판로지원정보 → 유통채널진출지원사업 → 입점역량강화지원 참여신청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6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3 2019년 Hi-Seoul 우수상품 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사업개요

-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유통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통 판매 활성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제조·생산한 B2C 상품 (지역 제한 없음)
- OEM, ODM 신청가능 (해외 제조 OEM, ODM 신청가능)
- SBA 유통카테고리(공고문하단참고)에 해당하는 상품

※ 제외요건

- 신청서 제출 당시 폐업신고 되었거나 3개월 이내 폐업 예정 기업이 제조한 상품
-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품
- 서울어워드를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상품
-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
-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 기타 브랜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SBA 유통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정확인서 및 엠블럼 제공
- 어워드 전용 온라인채널 '나만 알고싶은 꿀템'(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 웨이보) 홍보
- 종합 홍보지원(SNS 바이럴, 방송사 프로그램 연계, 홈쇼핑 등)
- SBA 서울유통센터 상품전시 등
- 선정 상품 소개 자료 번역(영문/중문) 및 바이어에 제공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기회 제공
- SBA 유통교류회 및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 SBA 서울유통센터 시설 대관 지원

※ 지원내용은 기업별, 상품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19년 4월 17일(수)~5월 15일(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서울산업진흥원 회원가입(<http://www.sba.seoul.kr>) → ② SBA서울유통센터 로그인(<https://smc.sba.kr>) → ③ 2019년 5월 서울어워드 참가상품 모집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④ 상품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⑤ 샘플 제출(~5/15) → ⑥ '신청서 조회/수정'신청내역 확인 가능



문의처 SBA 마케팅팀 - 이메일 award@sba.seoul.kr
SBA 마케팅팀 02-2657-5803, 5804
서울어워드 운영사 02-2657-5867 / 5868 (샘플관련 문의)

홈페이지 smc.sba.kr



4 직접생산확인제도

사업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 및 1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 참여 가능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생산공장 관련서류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정보센터 02-2124-3251~9
홈페이지 www.smpp.go.kr



중소기업유통센터

5 2019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사업개요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마케팅 준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홍보, 사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추진일정

< 2019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

구분	사업명	신청·접수	평가·선정	정부 보조율 (판매수수료)
마케팅역량	① 마케팅역량 강화	2월~3월	4월	70%
유통망 진출	② 온라인 시장 진출	2월~8월	3월~9월	(15% 내외)
	③ 정책매장 입점 지원	1월~11월	격월	(18~25%)
	④ 오프라인 기획전	연중	분기	(21% 내외)
	⑤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1월~4월	5월	90%
사후관리	⑥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연중	분기 2회	70%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접수

아임스타즈 홈페이지(<https://www.imstars.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정보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자가진단 → 상품선택 → 사업별 추가 제출 서류 등록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우: 07997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 자세한 자료는 아임스타즈 홈페이지(<https://www.imstars.or.kr>) 참조
홈페이지 www.imstars.or.kr (https://www.sbdc.or.kr/busi/05_07.asp)



01 » 마케팅역량 강화

사업개요

-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 프로그램(마케팅·브랜드·홍보)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조합·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조합·단체 : 공동상표를 이용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또는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 또는 욕탕 등을 운영하는 업종은 지원불가

지원내용

- 마케팅전략 수립 : 중소기업 보유제품에 대한 진단 및 판매전략 수립 지원을 통한 「기초적 마케팅역량」 체질 개선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제품진단	소비자·전문가 리서치 활동을 통한 제품의 시장가치 판단 및 개선방향 도출
마케팅전략 수립	유통채널 MD(바이어) 및 마케팅 전문가의 코칭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 빅데이터 분석·활용 : 제품 및 서비스 기획부터 제조·생산, 소비자 타겟 설정 등 전 분야 관련 「업체 맞춤형 데이터·제공」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분석, 고객분석, 신제품에 대한 고객니즈 파악, 타겟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활용
- 제품개선 : 마케팅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상품성 향상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성능 향상·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 지원
 - * 마케팅전략 수립 지원업체에 한해, 최대 15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기준)
- 브랜드개발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전략 수립, 홍보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 전략 및 콘셉트 수립·분석 등 지원
- 매체 홍보 :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제품·중소기업 홍보 지원
 - * 최대 30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기준)

지원조건

■ 사업비 예시(현물 최대한도 기준) (* VAT제외)

총사업비(100%)	정부지원금(70%)	기업부담금(30%)	
		현물상계(20%)	현금부담(10%)
70백만원	49백만원	14백만원	7백만원

* 정부지원금 : 최대한도 기준이며, 선정평가 시 지원금액 조정 가능(가감)

* 현물상계 : 기업 자체 마케팅 활동 추진비용(증빙서류 제출 必, 상계범위는 사업계획서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	선정평가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2월~3월	4월	5월~10월

* 마케팅역량 강화, 세부지원 프로그램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음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사업1팀 02-6678-9344-9346
홈페이지 www.imstars.or.kr



02 » 온라인 시장 진출

사업개요

- 민간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과 연계하여 우수제품의 판매 기획전 개최 및 입점 기회를 제공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품목 :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등

지원내용

- 온라인 상품기획전 :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연계하여, 우수제품 기획전 및 홍보 지원
 - * 오픈마켓(G마켓, 옥션), 소셜커머스(위메프)
- 홈쇼핑 방송지원 : 5개 TV홈쇼핑사와 연계하여, 창의혁신제품 판매방송 지원
 - * TV홈쇼핑사 : 롯데, 현대, CJ, GS, 공영
- Video-커머스 방송지원 :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동영상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방송 지원
 - * Video-커머스 :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쇼핑을 결합한 모바일쇼핑 방식

지원규모

- 온라인쇼핑몰 30회 내외, TV홈쇼핑 70회 내외, V-커머스 70회 내외 등

지원조건

구분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TV 홈쇼핑		V커머스
		4대社	공영社	
정부지원	100%	영상제작비 80% (5백만원 한도)	홈쇼핑사에 방송대금 지급 (12백만원)	100%

* 기업부담 : 온라인 유통망, 홈쇼핑에 따라, 판매수수료 부과(15% 내외)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문기관매칭	지원	비고
온라인 상품기획전	2월~6월	3월	4~12월	
홈쇼핑 방송	2월~8월	2~4월	3~12월	
V커머스 홍보판매지원	2월~8월	2~4월	3~12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일정 변동 가능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사업2팀 02-6678-9324~3
홈페이지 www.imstars.or.kr



03 >> 정책매장 입점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인 '아임쇼핑 정책매장'을 통해 창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한 혁신제품의 시장 검증과 유통망 연계지원

지원대상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품목 : 수입제품, 1차 식품,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 제품 등

지원내용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신상품의 신규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 공간 및 인력제공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매장 형식으로 운영, 중기제품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홍보기회 제공
 - * 판매수수료 : 25% 내외
- (우선선정) R&D, 창업, 스마트공장 등 중기부 사업 추천 우수제품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입점	판매정산
정책매장 운영	1월~11월	격월	매월	매월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및 매장 변동가능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조성단 유통망운영팀 02-6678-9722~3
홈페이지 www.imstars.or.kr



04 >> 오프라인 기획전

사업개요

- 민간 대형유통망,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오프라인기획 판매전 개최 및 입점 지원을 통한 판로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품목 : 수입제품, 1차 식품 등

지원내용

- 대형유통망 : 주요 백화점 등 유통망의 주요 장소에서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및 팝업매장 운영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매·홍보
 - 상품기획 제안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홍보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은 해당 유통망 입점기회 부여
 - * 최종적인 유통망 연계는 해당 유통망과 협의 후 결정
- 지자체 및 기관 : 지자체 및 기관 등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장소에서 오프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지원규모

- 오프라인 유통망 기획전 10회 내외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획전
오프라인 기획전	1~11월	분기별	연중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유통조성단 유통판로팀 02-6678-9731~3
홈페이지 www.imstars.or.kr



05 >> 대한민국 마케팅 Fair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전시회 개최로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 제고, 판로확대, 홍보강화 등의 기회 부여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및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 기타 참여형태 : 유관기관, 지자체, 공동브랜드, 대형유통업체 등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체험
-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판로유공자 시상식
- 대한민국 히트 스타상품 TOP5 공개오디션(공중파 생방송)
- 국내외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민간유통망과 연계한 “아임스타즈워크” 판매행사 및 홍보

지원규모

- 200개 내외 중소기업(국내·외 바이어 100여명 참가)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시회 참여
2019년 대한민국 마케팅 Fair	1월~4월	5월	6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사업2팀 02-6678-9322~25
 홈페이지 www.imstars.or.kr



06 »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사업개요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A/S 상담·처리를 지원하는 A/S망 구축·운영

지원대상

- 국내 공장에서 지원대상 17개 제품군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지원대상 17개 제품군 : 생활제품군, 주방가전군 등
 - * 지원 제외대상 :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건설부자재, 부품, 중간재, 의류, 일회성 · 소모성 생활 소비재, 가공식품 등 A/S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군

지원내용

- A/S상담 : 공동A/S콜센터를 통해 제품 사용법, 고장, 교환 등 상담 안내
- A/S처리 : 전국 126개 A/S대행 지점망을 구축하여 고장제품 수리 지원

지원조건

구분	사업비 부담내역	
	정부 보조금	업체 부담금
공동A/S 상담지원	70%	30%

추진일정

구분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수행
공동A/S지원	연중	분기별 2회	1~12월



문의처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마케팅사업1팀 02-6678-9341~2
홈페이지 www.imstar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 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항목은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하여 전시회 추천, 참가방법, 부스운영 등 전시회 참여 관련 상담 제공
- SNS,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1인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소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자부담 비중은 최소 20% 이상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신청 : '19. 1. 31(목)~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4.19(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7920, 7907 / make19@semas.or.kr
홈페이지 www.semas.or.kr



7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동네슈퍼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 및 협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지원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①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1개	4억
②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기반조성 단계	동네슈퍼로 구성된 협동조합	7개 내외
	체인화 단계	동네슈퍼 체인화 기반조성 단계를 거친 협동조합 중 선정	8개 내외
③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슈퍼조합	10개 내외	1억

* 지원분야③은 지원분야② 신청단체가 중복 신청 가능(지원분야 ③은 '18년도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별도 절차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 ①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전국규모 체인사업 운영을 위한 다음 활동의 소요 비용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자부담
시스템 구축	• 전국 공동구매, 온라인 수발주, 사업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130백만원	20% 이상
공동브랜드 개발	• 동네슈퍼 전국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보급	70백만원	20% 이상
공동마케팅	• (공동세일전) 전국 공동 할인행사 추진을 위한 전단지, 현수막 및 사은품 * 반기별 1회 이상, 회당 500점포 이상 참여 필수	170백만원	10% 이상
	• (공동구매) 상품기획, PB상품 개발, 전국 공동구매 등		
전문인력	• 체인사업관리 전문인력 채용 *1인당 국비 최대 월 300만원	30백만원	30% 이상

국비 지원한도 : 400백만원

*동일내용의 사업을 껴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공동세일전은 가능)

*인력은 신규채용이 원칙(18년 사업 참여로 채용한 인력은 지원 가능)

②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 기반조성 단계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네슈퍼 체인화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자부담
체인본부 운영시스템	• (시스템 구축) 온라인 수발주, 개별점포 경영분석 등 협업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	-
	• (전담인력) 협업사업 운영·관리 전담인력 * 1인당 월 200만원 한도, 신규채용이 원칙	24백만원	30% 이상
점주교육	• (점주교육) 경영마인드 및 점포경영기법 개선, 벤치마킹, 온라인 수발주 등 교육(필수) * 분기별 1회 이상, 1회 교육은 4시간 이상으로 운영	20백만원	-
공동구매/ 마케팅	• (공동세일전) 공동 할인행사, 계절상품 이벤트 등(필수) * 반기별 1회 이상, 회당 20개 점포이상 참여 필수 • (공동구매) 상품 기획, 공동구매 관리 등	60백만원	10% 이상

국비 지원한도 : 100백만원

③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자부담
배송시설	• 입·출고 시설, 적재 설비(랙, 냉장) 개선 • 레이아웃 재설계, 소분시스템(DPS, DAS 등) 등	-	40%이상
배송장비 및 물품	• 배송차량(냉동·냉장·윙바디·리프트), TMS모듈 등 * TMS(운송관리시스템) 통신비용은 지원 제외 • 지게차, 핸드자키, 고소 작업대 등 • 롤케이지, 핸드터미널, PDA, 파렛트 등	-	
	• 재활용 가능한 소분상자 및 라벨지 등 소모품	10백만원	
배송인력	• 상품 배송, 소분 등 배송체계 운영을 위한 상시근무 인력 인건비, 단, 배송인력 지원은 전체 지원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배송인력 1인당 국비 지원한도는 월 200만원이며, 지원 인원수는 물류센터 배송인력의 50% 이내로 한정	50백만원	30%이상
배송구역	• 상품배송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역비 지원	-	10%이상
배송기반 조성	• (공동세일전) 공동구매, 홍보비용, 고객사은품 등	10백만원	10%이상
	• (점주교육) 경영마인드, 점포경영기법, 벤치마킹 등	30백만원	-

국비 지원한도 : 100백만원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 '19. 3. 14(목)~4. 5(금) 18:00까지



문의처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042-363-7749, 41)

신청문의 : e나라도움(1670-9595)

홈페이지

www.semas.or.kr



8 2019년 소상공인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사업개요

-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입점,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제품판매를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휴·폐업 및 부도, 해외수입제품 등 일부지원 제외대상은 신청불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홈쇼핑진출교육		국내홈쇼핑 진출입점절차 등에 관해 분야별 민간유통전문가와 교육 및 멘토링 상담진행
상품보완 및 컨설팅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진단, 소비자 반응 조사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종합몰 등)내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홍보 및 상품판매 등
	T-커머스	T-커머스 채널에 소상공인 상품판매 전용시간 확보후, 방송준비 및 입점 등
	TV홈쇼핑	TV 홈쇼핑 채널에 소상공인 상품판매 전용시간 확보 후, 방송준비 및 입점 등
	국내 V-커머스	민간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해 소상공인상품의 영상콘텐츠 제작 및 판매 등
	해외온라인	해외 온라인몰 입점, V-커머스 및 제품홍보영상 송출 등
1인 홈쇼핑 아카데미		커머스, 콘텐츠 제작 등 1인방송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9.4.15(월)~5.14(화)까지
- 접수방법 : 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636-7982-3 / sbiz@sbds.or.kr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52~5 / inno@semas.or.kr
 홈페이지 www.imstars.or.kr



코레일유통

9 2019년 중소기업명품마루 업체선정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기회 제공

지원대상

-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생산 제품
- 국내 우수중소기업으로 제안 제품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업체
- 국내외 공장에서 위탁하여 OEM생산 업체
 - ※ 미 자격자가 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됨

지원내용

- 모집분야: 역사 내 매장 판매 가능한 일반 소비재 상품
 - ① 패션: 패션잡화, 공예, 기념품, 기타 패션용품 등
 - ② 뷰티: 마스크팩, 기초화장품 등
 - ③ 식품: 가공식품, 친환경 유기농 식품 등
 - ※ 1차식품, 냉동냉장 식품 판매 불가
 - ④ 생활용품: 생활아이디어상품, 리빙/주거용품, 전자기기 등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jhj9453@korailretail.com(이메일접수)
 - * 이메일 접수 제목: (업체명)입점신청서(00월.00.일)
- 제출서류
 - ① 중소기업명품마루 입점 희망 신청서 1부
 - ② 중소기업명품마루 입점 희망 상품제안서 1부
 -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⑤ OEM계약서, 특허/디자인/실용실안등록증 등 원천기술보유 증빙서 1부(해당기업)
 - ⑥ 중소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1부 (택1)
 -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확인증
 - 소상공인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공인세무사가 발행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인정)
 - 벤처기업 확인서
 - 기타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출기한 마감 시까지 필요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탈락처리
 - ※ 필요시 추후 원본증빙 별도 제출
- ⑦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상품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유의사항

- 매장의 이미지 훼손, 사회통념상 공공성 저해 행위 등 적발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즉시 퇴점 조치함
- 유통업자 등 직접 제조 생산기업이 아닌 경우 입점을 제한함
- 매장 특성 상 1차식품, 냉동냉장식품, 부피가 큰 상품은 입점 제한함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문의처 코레일관광개발 유통사업처 유통영업팀 02-2084-7751
홈페이지 <http://co.korailtravel.com>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 협동조합 상품 품평회

사업개요

- 판로전문가(MD, QA등)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지닌 협동조합 상품을 발굴하여, 유통채널 입점 연계

지원대상

- 상품화가 이루어진 제품을 보유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 협동조합 상품의 품질, 디자인 등 질적 수준 제고 및 맞춤형 상품개선 지원
- 진흥원과 협업하는 TV홈쇼핑 판매방송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민간 유통채널(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품평회, 상품 기획전 등 행사 개최 시 참여기회 제공
* 단, 민간유통채널 입점지원의 경우 유통채널 담당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설명회, 상담회 등에서 제품 활용 및 홍보 기회 제공

신청 및 접수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추후 공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4
홈페이지 www.coop.go.kr



11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개요

- 협동조합 등 당사자조직이 주도하여, 지역 현장 수요 및 상품 품목(제품·서비스)에 따라 협동조합과 협업 추진하는 공동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 상품 공동판로개척 아이디어 보유 기관
 - 참가조건 : 공모 참가 신청 전,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업기관'으로 임의 구분
 - 1)수행기관(1개소) 포함 3개소 이상 참여, 2)협업기관의 50% 이상은 사업자등록을 완료 한 기본법 협동조합으로 구성해야 함

< 수행·협업기관별 참여대상 범위 및 주요 역할 >

구분	참여대상	주요역할
수행기관	• 기본법협동조합(연합회) • 개별법협동조합(연합회)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상품 유통이 가능한 비영리 목적의 기관 및 단체	• 공모 신청 서류 제출 • 대면평가 참여 • 진흥원과 협약 체결, 정산, 현황공유 등 사업관련 논의·결과보고 • 함께 참여하는 협업기관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협업기관	• 기본법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수행기관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판로사업 추진 등

지원내용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상품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유통채널 MD 파견 지원 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19.3.19.(화) ~ '19. 4. 23.(화) 18:00까지
 - (2차 신청기간) '19.5.15.(수) ~ '19. 7.1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coop@ikosea.or.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4
홈페이지 www.coop.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2 협동조합 상품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사업개요

- 협동조합 상품의 e-store 36.5+ 등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을 위한 협동조합 상품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본법협동조합
 - 기 협동조합 상품물에 상품 등록이 완료 된 협동조합
 - e-store 36.5+에 입점사로 가입을 신청 한 협동조합

지원내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협동조합 판로지원 사업 참가 기회 제공 등
 - (상세페이지 제작) 협동조합이 공모 시 제출한 이미지, 정보 등을 활용, 커스터마이징 방식을 통해 맞춤형 상세페이지 제작
 - (상세페이지 전달) 상세페이지 제작 완료 시, 자유롭게 활용 가능토록 해당 협동조합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개별 전달 예정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9. 3. 11.(월)~'19. 4. 10.(수)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coop@ikosea.or.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8
홈페이지 www.coop.go.kr



13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지역·업종별, 창업·폐업, 인구, 집객시설 등 53종의 상권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국민(소상공업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내용

- (상권분석)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 53종의 상권정보 제공
- (경쟁분석) 업소별 경쟁역영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 (입지분석) 특정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등급정보
- (수익분석) 특정 위치, 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제공
- (점포이력) 특정위치의 개·폐업 이력정보, 특정업종의 창업여부 및 영업기간 등의 정보제공
- (경영컨설팅) 5개 업종에 대한 시장환경 및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별 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안

이용방법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문의처 콜센터 1644-5302
홈페이지 <http://sg.sbiz.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 협동조합 유통채널 진입지원사업

사업개요

- 기본법-개별법 협동조합간 상호거래 촉진 및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판로환경 조성

지원대상

- 유통채널 발굴 및 사회적경제 상품 유통이 가능한 협동조합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유통기관 통해 생협 등 자체 유통채널을 보유한 협동조합 발굴 및 유통채널에 사회적경제 상품연계
- 지원규모 : 1개 기관 선정, 최대 41,000천 원 지원
- 지원항목
 - 사회적경제 상품전 기획, 조성, 운영 비용
 - 사회적경제 기업(상품) 관리비용
 - 사업 추진시 필요한 인력비용 (MD, 세일즈스태프 등)
 - 기타 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추진비용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공기간~19.8.27(화) 10: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coop@ikosea.or.kr
- ※ 메일제목 : 유통지원기관 공모신청_○○○기관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4
홈페이지 www.coop.go.kr



15 공공시장 진출전략 강화지원사업

사업개요

-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쟁력 증진 및 자생력 제고

지원대상

- 서비스업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 참가조건

- 공모 참가 신청 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수행 목표에 부합하는 컨설팅 업체를 발굴하여 협의 후, 컨설팅을 통한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본 사업에 지원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수행 사업과 목표시장 설정, 공공시장 진출에 적합한 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의 면담 및 컨설팅 실시하여야 함 (총 12시간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현황(준비정도, 이해도 등)에 대한 진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목표 시장 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과업 기간종료 후 향후 추진목표 및 전략과제 제시 필요
- 지원규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개소 내외, 기관별 최대 7,000천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10. 21. (월) 오전 10시, coop@ikosea.or.kr
- 신청방법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협력운 영팀 031-697-7746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4

기타 인증 및 지정제도



04

기타 인증 및
지정제도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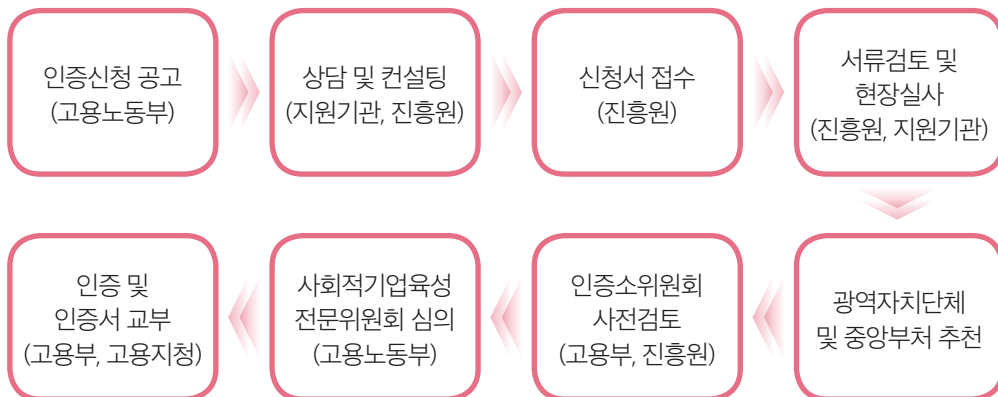
1 사회적기업

사업개요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신청가능
-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공고일~12.27(금)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여 사회적 목적과 관련한 영업 활동을 한 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인증 요건

■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기존 기타형을 말함)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문의 및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13292)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27. 내 상시접수)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필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전화 031-697-7721~7729 / 팩스 031-697-6916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으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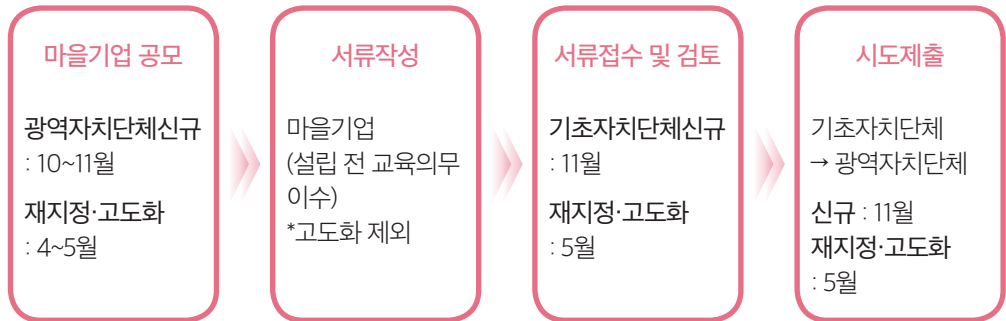
2 마을기업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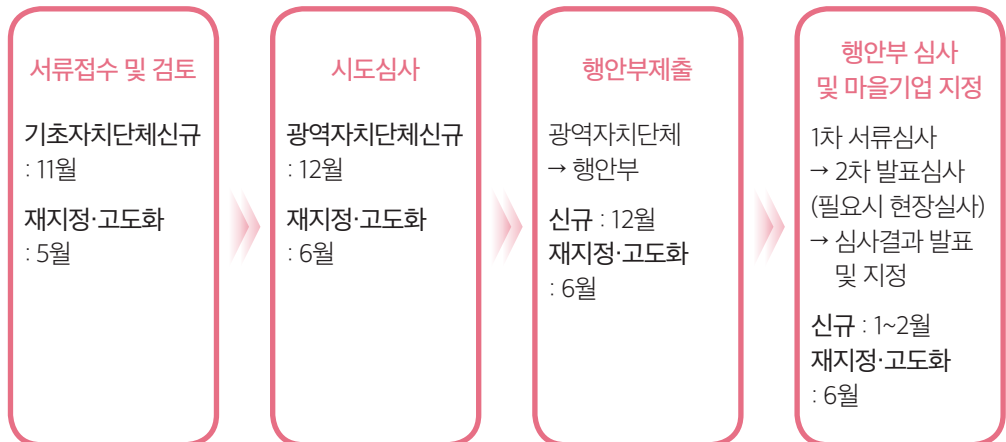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신청과 심사절차

■ 신청절차



■ 심사절차



마을기업 선정요건

■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함

①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②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됨

③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총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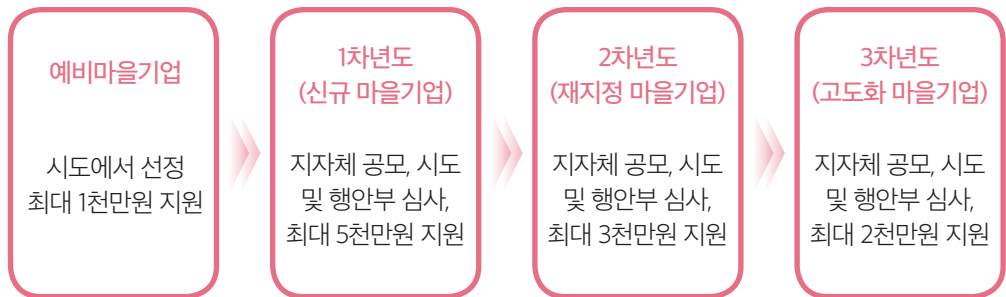
④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내용

■ ①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년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② 특화형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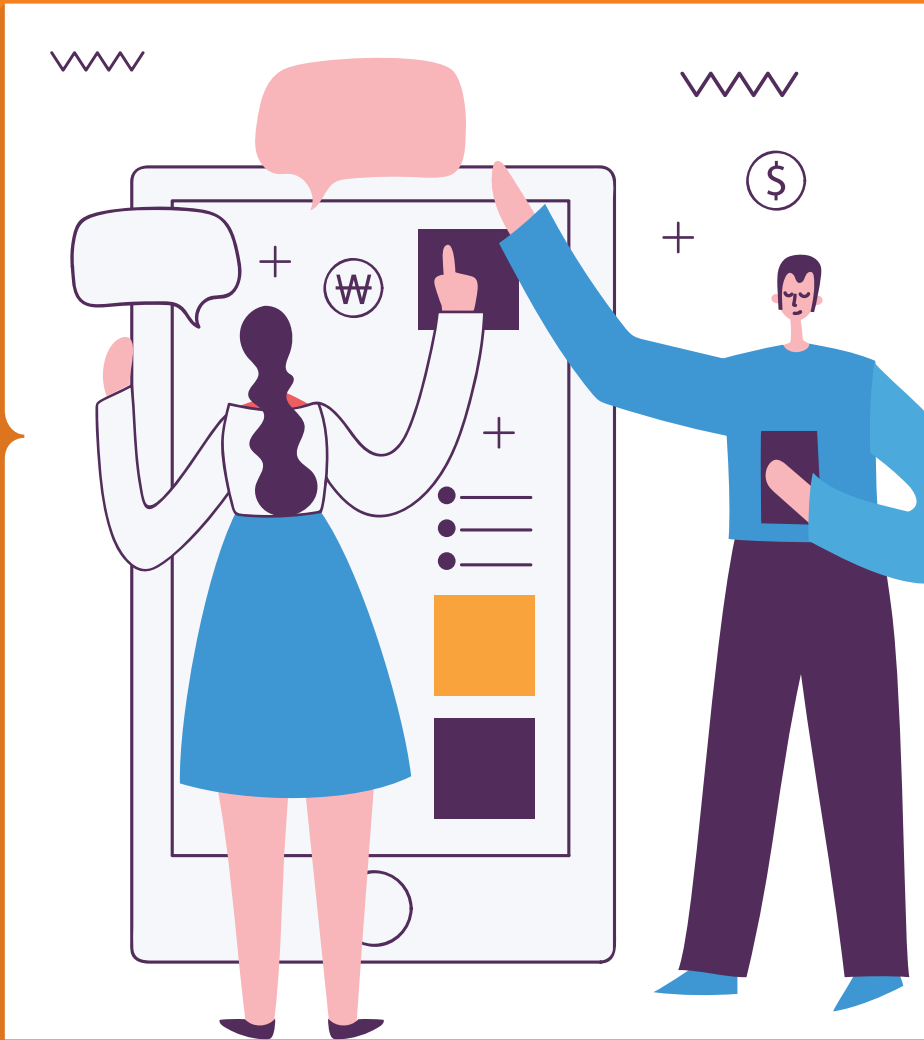
③ 자립지원

- 마을기업 자립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소개, 예산 확보, 기관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을 변경되거나 추가 또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유통지원센터 구축,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등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05

온라인 쇼핑몰



05

온라인
쇼핑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e-store 36.5+



홈페이지

www.sepp.or.kr

쇼핑몰 소개

- 사회적경제기업과 민간·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상품 수요자들을 연결
-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약을 위한 원스톱 판로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 구성원과 동행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

입점대상

- e-store 36.5+를 통해 상품 판매 등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소셜벤처),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기업

입점 품목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판매 하는 제품 및 서비스

- 제품유형 : 교육용품, 건강/의료, 공정무역상품, 패션의류/잡화, 시스템/소프트웨어, 컴퓨터/주변 기기/전자, 디지털/가전, 전문장비, 기계/설비, 자동차/공구, 전기/시험/계측, 섬유/고무/위생, 화학/소방/안전, 식물류, 전통주, 전통공예품, 식품, 가구/인테리어, 문구/사무용품, 생활/취미용품, 출산/육아용품, 화장품/미용
- 서비스유형 : 여행/체험서비스, 임대(렌탈), 교육서비스, 청소/건축/시설 관리서비스, IT/출판/컨설팅, 사회서비스, 예술/문화, 기타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 공공조달 및 판로지원 정보제공

입점방법

- 입점시기 : 상시
- 입점절차 : e-store36.5+ 홈페이지(www.sepp.or.kr) 하단 “입점사 회원가입”이후, 입점사관리 홈페이지(<https://www.sepp.or.kr:1443/seller/>)를 통해 이용 가능
- 입점문의 : 070-5226-1102

수수료

- 판매수수료 : 무료
- 카드수수료 : 결제 건당 2.5%(VAT 별도)
- 가상계좌수수료 : 결제 건당 200원(VAT 별도)
- 계좌이체수수료 : 결제 건당 1.6%(VAT 별도)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697-7836



서울산업진흥원

2 함께누리

지역/홈페이지

- 전국 / www.hknuri.co.kr

쇼핑몰 소개

-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개척/홍보/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가 만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제품 및 재화/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사업자등록必)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주문 및 배송 처리를 포함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 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사회적경제 기업

입점 품목

- 사무용품, 생활용품, 도서, 꽃배달, 공정무역 상품 등

지원내용

- 입점수수료 면제
- 공공구매 영업
- 온, 오프라인 마케팅
- 정산 및 CS 관리 대행
- 진흥원사업 우선 지원
- 무료 카달로그 제작 및 상품 사진촬영 지원

입점방법

- 온라인몰 상단 메뉴탭 “입점신청”클릭 → 업체/상품 관련 정보 기입 → 필요 제출 서류 첨부 → “등록하기”

필요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 / 공장등록(해당기업) 등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사업자등록증상주소가 서울인 등록업체 무료(카드수수료별도)
 - 사업자등록증상주소가 서울인 등록업체 5%(카드수수료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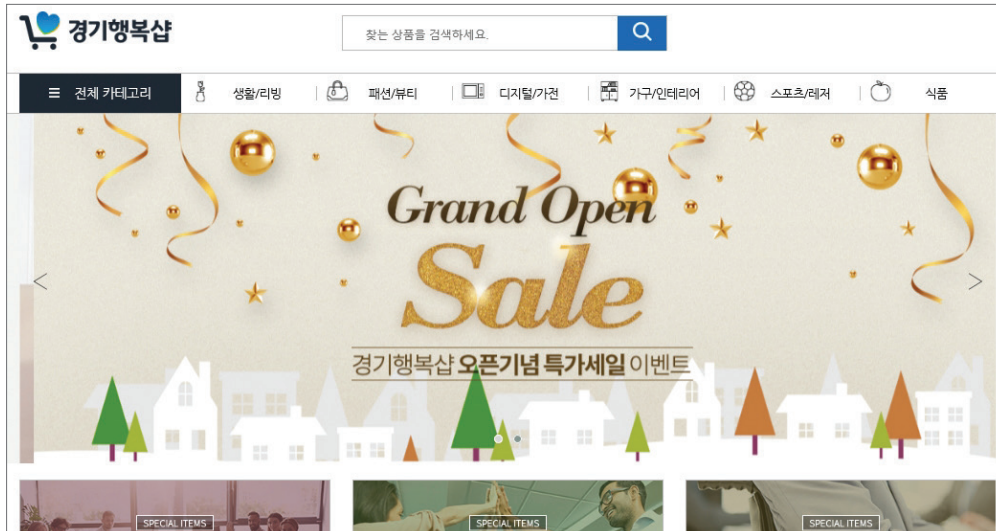
문의처

함께누리 담당자 전화 02-6357-3896 / 이메일 hknuri@hknuri.co.kr



경기테크노파크

3 경기행복샵



지역/홈페이지

- 전국 / www.gstore.or.kr/

쇼핑몰 소개

- 경기행복샵은 네이버 쇼핑과 (재)경기테크노파크가 함께 경기도 중소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는 쇼핑몰로 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운영

입점대상

- 현재 경기도 내 네이버스토어팜 사업자 판매자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생산 제품(제품을 직접 개발, 제작, 제조 또는 OEM 생산기업)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 단순 유통기업, 수입제품판매, 네이버스토어팜 판매 기준 미취급 품목 제외

입점 품목

- 디지털/가전, 가구/인테리어, 생활/건강용품 등

지원내용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물 매출연동수수료(2%) 할인 일괄적용(최대3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물 입점 및 관리자 운영 무료교육 지원(월1회)
- 네이버 쇼핑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기획전 홍보지원
- 미니스튜디오 무료 제품촬영지원 및 온라인교육

입점방법

- **입점절차** : 경기행복샵 입점기업 모집공고(월 1회 모집) → 경기행복샵 입점신청 → 입점승인 및 반려 → MD컨설팅(승인 후 개별연락) → 네이버 샵N(스토어팜) 기업회원 판매 아이디개설 → 제품홍보 상세 페이지 제작지원(제품이미지 촬영, 디자인, 홍보문구 등) → 입점 및 판매

필요 제출서류

- 입점신청서 등
 - 입점신청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일반공고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수수료

- 네이버 쇼핑물 수수료 5.74%에서 2% 할인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031-500-3000
 홈페이지 <http://www.gstore.or.kr/introduce>



경기도

4 경기사이버장터

경기사이버장터

고소하고 달콤한 옛맛 주원부리 기획전!

감사한 마음 담은 가정의달 기획전!

쌀사면 반잔이 100원!

리뷰쓰고 커피한잔!!

고기만능 쌀 주나눔! 쌀 500g 증정!

다양한 버섯을 한번에!

2팩

모듬버섯 500g x 2팩 20,000 15,000원

다양한 버섯을 한번에 즐기세요!

지역/홈페이지

- 경기도 / kgfarm.gg.go.kr

쇼핑몰 소개

- 경기사이버장터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농업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 쇼핑몰로 유통과정 없이 농가와 직접 연결하여 경기도내의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

입점대상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기업체)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제조 / 가공업체(기업체)

입점 품목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지역특산물

입점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경기도사이버장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자 조사 평가
 - 신청서류 검토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해, 매월 30일까지 현지실사 및 평가
- 입점승인 및 계약 체결
- 상품 입점

필요 제출서류

- 입점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카드수수료 3.1%, ok캐쉬백 적립수수료 2% 등

입점 시 우대항목

- G마크인증 농,특산물 우선 입점



문의처 경기도사이버장터 고객센터 031-250-2765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강원공간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 <http://gwgoods.com>

쇼핑몰 소개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물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공구매몰
- 소비자에게는 도내 사회적경제 물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들에게는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쇼핑몰

입점대상

- 강원도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쇼핑몰 규모

- 61개 업체, 208개 제품

지원내용

- 제품사진 촬영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온라인 이벤트 지원
- 특판 현장 지원

입점방법

- 이메일을 통해 제휴 및 제안 접수(gwgoods@daum.net) → 입점신청서 서류심사 → (필요시)방문심사·제품 검수 → 입점 수수료 등 협의 → 최종 입점 논의(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입점 통보

필요 제출서류

- (추후) 입점 확정시 필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증서 등), ④ 기업 로고(AI파일), ⑤ 상품이미지, ⑥ 단가표 및 배송관련 정보, ⑦ 원산지증명서/자가품질검사서/품목 제조보고서

수수료

- 기본 수수료는 15%이나,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별로 문의 바람

입점 시 우대항목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우수상품 5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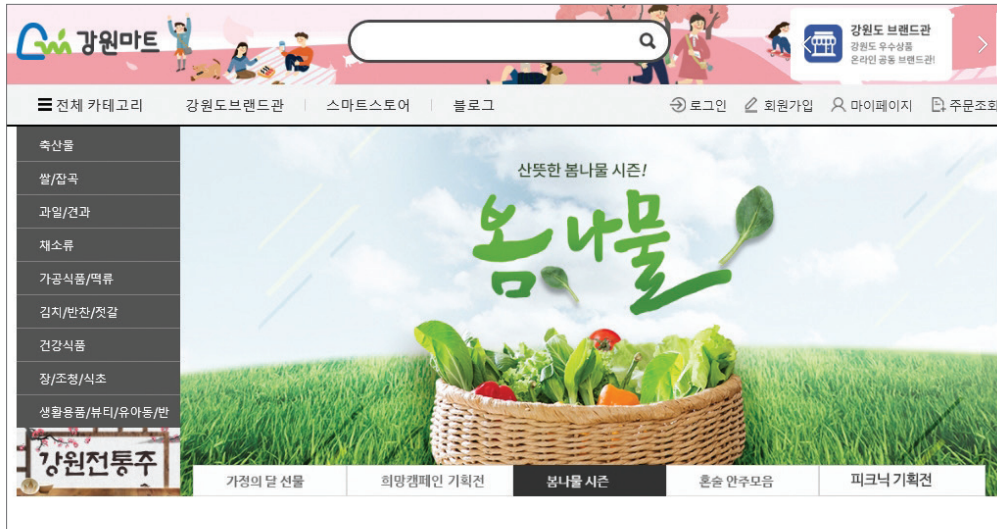


문의처 강원곳간 고객센터 전화 033-256-0765 / 이메일 gwgoods@daum.net
홈페이지 <http://gwgoods.com>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 강원마트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 www.gwmart.kr

쇼핑몰 소개

- 강원도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청정강원도 상품만을 판매하는 강원도 대표 인터넷 쇼핑몰

입점대상

- 강원도 내 소재 기업으로 직접 제조 / 가공 기업
- 강원도 내 1차 농산물 생산자
- 생산자 단체 및 공공기관(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우체국 등)

* 단순 유통업 제외

지원내용

■ 쇼핑물 제작지원

- 쇼핑물 제작 자료 제출

※ 메일(gw-mart@naver.com)발송 및 방문 제출

입점방법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물 운영능력 평가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쇼핑물 제작지원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카드수수료



문의처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마케팅 1팀
전화 033-749-3315, 3317, 3318 / 이메일 help@gwmart.kr



원주시

7 원주물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원주시 / wonju-mall.co.kr

쇼핑몰 소개

- 강원도 원주시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판매 관리 교육 및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독자적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함.

입점대상

- 원주시 내 소재기업으로 직접 제조/생산 기업(도·소매 제외)
- 관련 조합·단체(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 원주시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입점 품목

- 축산, 쌀/잡곡, 과일, 채소, 가공식품/떡류, 김치/반찬류, 건강식품, 장/조청/식초, 생활용품, 원주 한지

입점방법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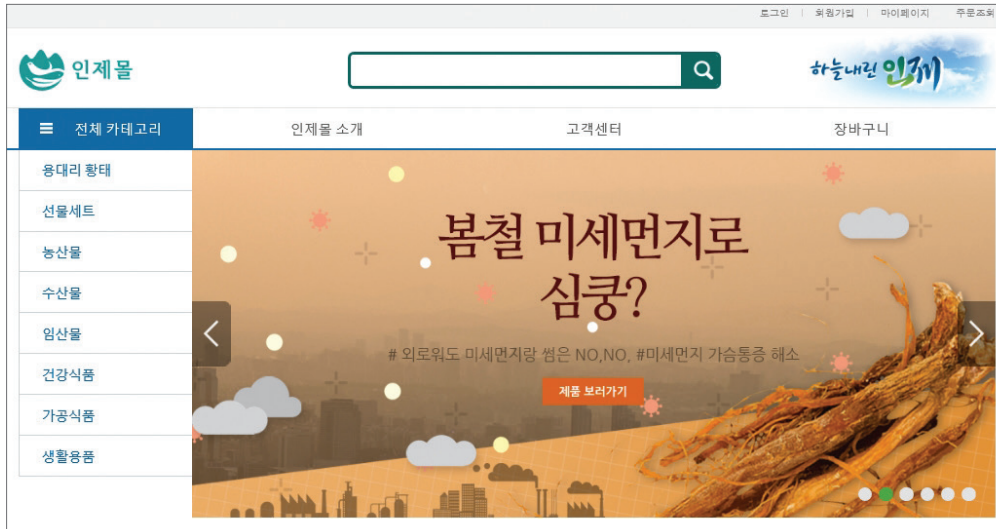


문의처 전화 033-749-3315 / 이메일 gw-mart@naver.com



인제군

8 인제물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인제군 / 인제물.com

쇼핑몰 소개

- 인제지역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판매관리 교육 및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독자적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입점대상

- 인제군 내 소재기업으로 직접 제조/생산 기업
- 관련 조합·단체(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 인제군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입점 품목

- 쌀/잡곡, 과일, 채소, 축산물, 건강식품, 수산물/건어물, 가공식품, 반찬/장아찌/젓갈, 장류

입점방법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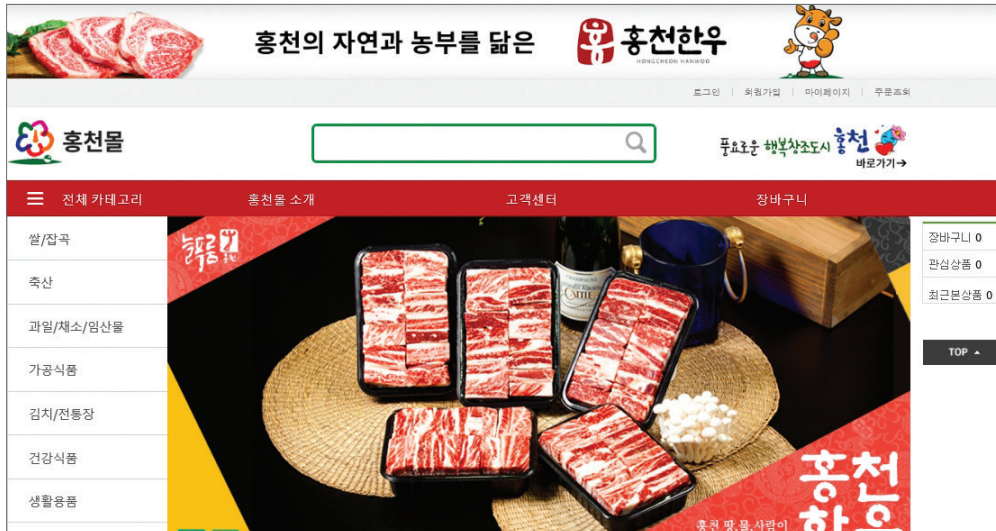


문의처 전화 033-749-3351 / 이메일 gw-mart@naver.com



홍천군

9 홍천물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홍천군 / 홍천물.com

쇼핑몰 소개

- 홍천물은 홍천지역의 우수 제품과 청정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성장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청정 홍천의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만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쇼핑몰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음.

입점대상

- 홍천군 내 소재기업으로 직접 제조/생산 기업
- 관련 조합·단체(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 홍천군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입점 품목

- 쌀/잡곡, 축산, 과일/채소/임산물, 가공식품, 김치/전통장, 건강식품, 생활용품

입점방법

- 신청
 - 입점 상담 신청
 - 입점 신청서 제출
- 평가
 -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확인
 - 쇼핑몰 운영 능력 평가
- 계약체결
 - 강원마트 입점 계약
 - 전자결제 이용 계약
- 쇼핑몰 제작지원
 - 쇼핑몰 제작 자료 제출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없음



문의처

입점 담당자 전화 033-749-3315 / 이메일 gw-mart@naver.com



태백시

10 하늘다음태백



지역/홈페이지

- 강원도 태백시 / www.taebaekmall.com

쇼핑몰 소개

- 태백시청 신활력사업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태백시의 농/특산물을 복잡한 유통과정 없이 공급

입점대상

- 강원도 태백시 소재 기업 혹은 개인(마을기업포함)

입점 품목

- 태백나물, 태백김치, 태백과일 등 가공 조리식품

입점방법

- 위탁업체인 태백농업주식회사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방문 상담
(기존 입점상품과 중복되는 상품은 입점 불가능)

수수료

- 품목별 수수료 협의
- 관리비, 위탁수수료, 카드수수료 별도



문의처 하늘다음태백 고객센터 033-553-0045



11 와이팜



지역/홈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 / www.yfarm.co.kr

쇼핑몰 소개

-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의 안정과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세종시가 추천하고 보증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입점대상

- 세종시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업체)
※ 복숭아, 배 농가는 기존 입점농가 외에 추가입점은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입점 가능

입점 품목

- 농수축산물, 김치, 가공식품, 웰빙식품

입점방법

- 와이팜 홈페이지에서 입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와이팜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제출
 - 입점확정 통보를 받은 후, 홈페이지제작신청서(링크한 것)을 작성 제출
 - 와이팜에 배송상품과 똑같은 사진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상품을 제출하여 쇼핑몰에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
- ※ 수시 가격변동사항에 대하여 운영센터에 통보

수수료

- 입점수수료 + 판매수수료 : 와이팜 영농조합법인의 내규
- 정산절차 : 와이팜 운영센터에서 소비자 주문일 기준, 월~일요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2주 후 목요일 정산, 매주 1회 농가별로 입금과 동시 내역서 송부



문의처 세종시 농산물 쇼핑몰운영센터 044-864-2525~9
 홈페이지 <http://www.yfarm.co.kr/main/page.php?pgid=020014000000000>



12 농사랑



지역/홈페이지

- 충청남도 / www.nongsarang.co.kr

쇼핑몰 소개

- 농사랑은 농·축산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장터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입점대상

- 충남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가공업체(원부재료 5%이상)

* 단, 유통업체는 입점 불가

입점 품목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국내산을 주 원료 또는 주 재료로 사용하여 충청남도 내 생산한 제품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ex. 주류, 담배, 의약품 등)

입점방법

- 입점신청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농사랑 입점 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 처리기간 : 3.5개월(상품 및 자료에 따라 다름, 사이트 첨부 파일 참조)
- 입점 최종 평가
- 입점 승인 및 계약 체결
- 상품입점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6%(카드 수수료 포함)



문의처

입점 담당자 전화 041-544-7951 / 이메일 sangsang01@hanmail.net



13 따숨몰



지역/홈페이지

- 충청남도 / www.ddasummall.co.kr

쇼핑몰 소개

-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공동쇼핑몰 따숨몰은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입점대상

- 충청남도내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입점 품목

- 농축산물, 반찬/장류, 가공식품, 건강식품, 도시락/단체급식, 생활용품, 교육/문화/체험, 서비스, 컴퓨터 주변기기, 간병/요양/돌봄

입점방법

- 상시 입점 가능 : 입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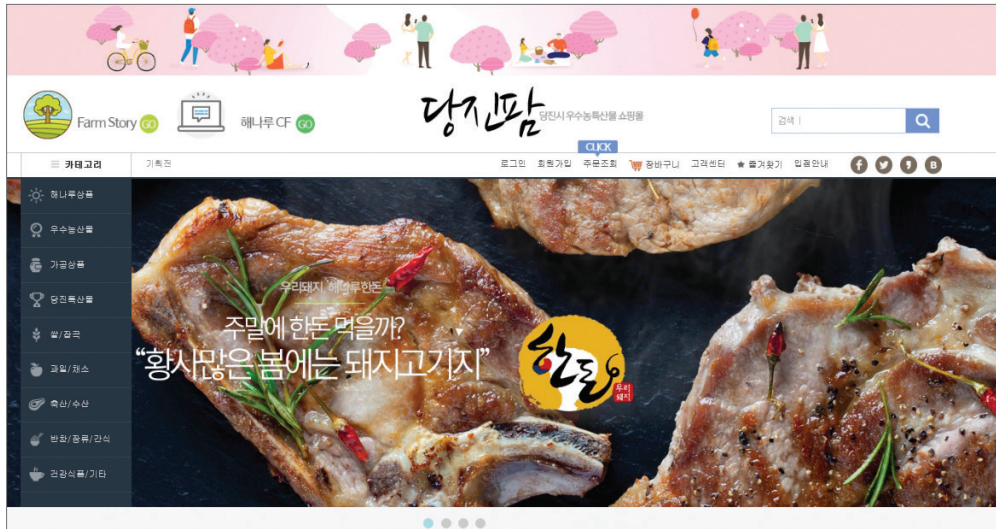


문의처 고객센터 041-417-0014
홈페이지 <http://www.ddasummall.co.kr>



당진시

14 당진팜



지역/홈페이지

- 충청남도 당진시 / www.dangjinfarm.com

쇼핑몰 소개

- 지역농산물을 규모화, 단일화, 고품질화하여 대형유통업체, 식자재업체, 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

입점대상

-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당진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 당진에서 거주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가공업체

입점 품목

- 당진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함
- 당진의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품
- 안정성 및 우수품질을 확보한 제품 우선입점추진
 - 충남도지사 품질인증Q마크 및 GAP(우수농산물)인증, HACCP인증, 친환경인증 등

입점방법

- 입점신청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및 당진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입점평가 : 서류검토 및 입점의뢰상품 샘플로 평가함
- 입점승인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입점승인 공문발송후 계약체결
- 상품입점 : 입점상품 및 관련자료 제공 받아 웹페이지 구축 후 당진팜에서 판매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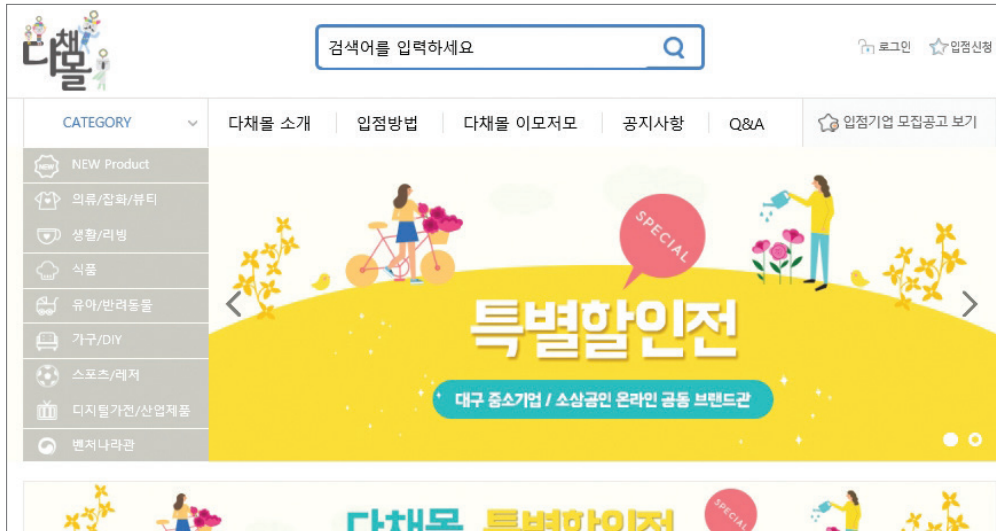


문의처 전화 041-350-4989 / 이메일 pbs620108@korea.kr
 홈페이지 <http://www.dangjinfarm.com>



대구광역시

15 다채몰



지역/홈페이지

- 대구광역시 / www.dachaemall.kr

쇼핑몰 소개

- 다채몰은 대구광역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역 제조/유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브랜드관
- 대구지역 기업이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연계하여 다채몰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음

지원내용

- 네이버 연계 지원 : 네이버 지식쇼핑 연동 수수료 면제(2%), 네이버 상품기획전(다채몰관) 참가 지원
-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판로 지원 : 다채몰 팝업스토어 운영, 국/내외 온라인 신규 판로 개척 지원 등
- 홍보 지원 :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다채몰 블로그/SNS 활용 온라인 홍보 지원 등
-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다채몰 입점기업 네트워크 세미나/간담회 개최

모집분야

- 대구지역 소재의 제조업, 유통판매업, SW융합/지식기반 상품, 통신판매업 등록 소상공인등 (네이버지식쇼핑에서 판매불가능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제외)

입점 품목

- 의류/잡화/뷰티, 생활/리빙, 식품, 유아/반려동물용품, 가구/DIY, 스포츠/레저, 디지털가전/산업제품

입점방법

- ① 입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입점기업 선정평가위원회 ③ 선정결과 안내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⑤ 스토어팜 사업자 판매자 절차 ⑥ 스토어팜 정보제출 및 다채물 가입 ⑦ 다채물 상품등록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네이버 지식쇼핑 연동 수수료 면제(2%,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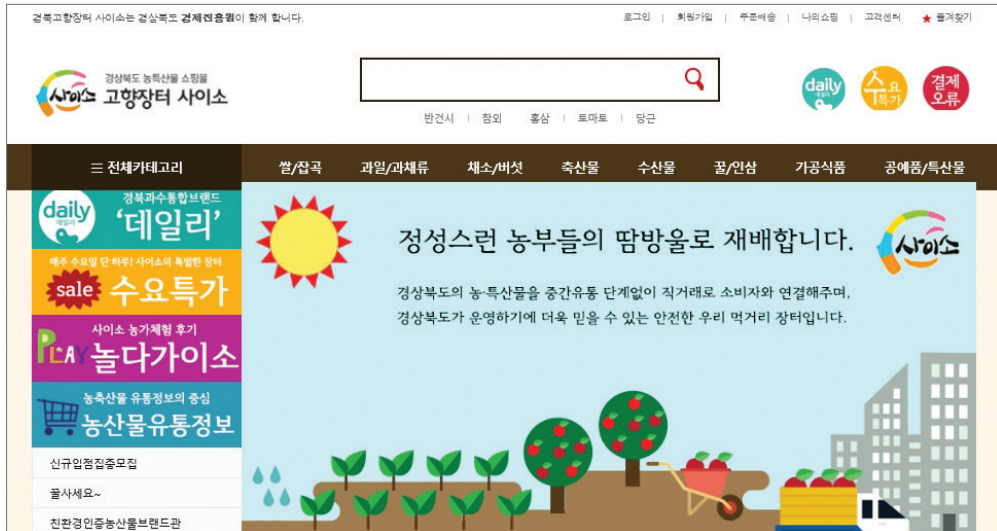
문의처
주소

입점 담당자 전화 053-655-5614 / 이메일 cool@dip.or.kr
(우.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대흥동 387), 5층 506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6 사이소



지역/홈페이지

- 경상북도 / www.cyso.co.kr

쇼핑몰 소개

- 경북의 품질 좋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를 경상북도가 엄선하여 입점 시키는 것은 물론, 수수료 없이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을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

입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재배 생산된 농, 특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생산자단체로서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국내산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사용하여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함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 (기업체)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업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업체

입점 품목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주류, 담배, 의약품 등)
- 우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 (경상북도우수농산물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우수농산물(GAP)인증, 친환경 인증,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

입점방법

- 입점 신청 → 입점 최종 평가 → 입점 승인 → 상품 입점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판매대금의 5%
- 대금정산 : 매월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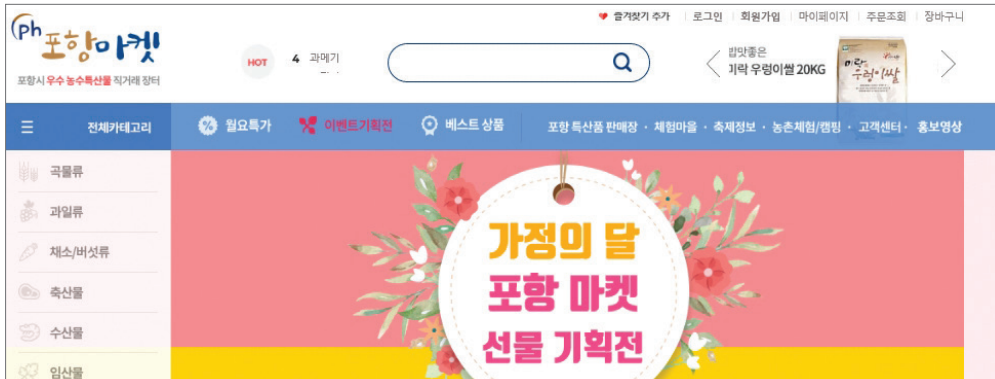


문의처 사이소 고객 만족센터 전화 1644-4245 / 이메일 gepa2016@daum.net
홈페이지 <http://www.cyso.co.kr>



포항시

17 포항마켓



지역/홈페이지

- 경상북도 포항시 / pohangmarket.pohang.go.kr

쇼핑몰 소개

- 포항시에서 생산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우수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은 유통단계 없이 저렴하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대상

- 경상북도 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농/축/수산물 및 관련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

입점 품목

- 곡물류, 과일류, 채소/버섯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품, 꿀/인삼, 공예품/특산물

입점방법

- 입점신청서 제출 → 입점농가 신청 → 입점결과 통보



문의처

포항마켓 고객센터 전화 054-610-4111 / 이메일 klpf1234@daum.net

18 봉화장터



지역/홈페이지

- 경상북도 봉화군 / bmall.go.kr

쇼핑몰 소개

- 「봉화장터」는 봉화군이 운영하는 봉화군의 대표 쇼핑몰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택배, 도로의 발달로 유통의 구조가 변화하는 때에 도농직거래 시대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봉화장터」는 봉화농업인이면 누구나 입점하실 수 있는 공공의 쇼핑몰입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봉화장터」에 입점하는 농업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가져올 변화에 봉화인과 함께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입점대상

- 봉화군에 주소들 둔 생산자
-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한 작목 및 상품
- 가공된 상품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식품위생허가를 득한 생산자로서 자체 포장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농업기술센터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입점 품목

-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 분야의 1차생산물 또는 가공품 및 봉화군을 특징할 수 있는 특산물

입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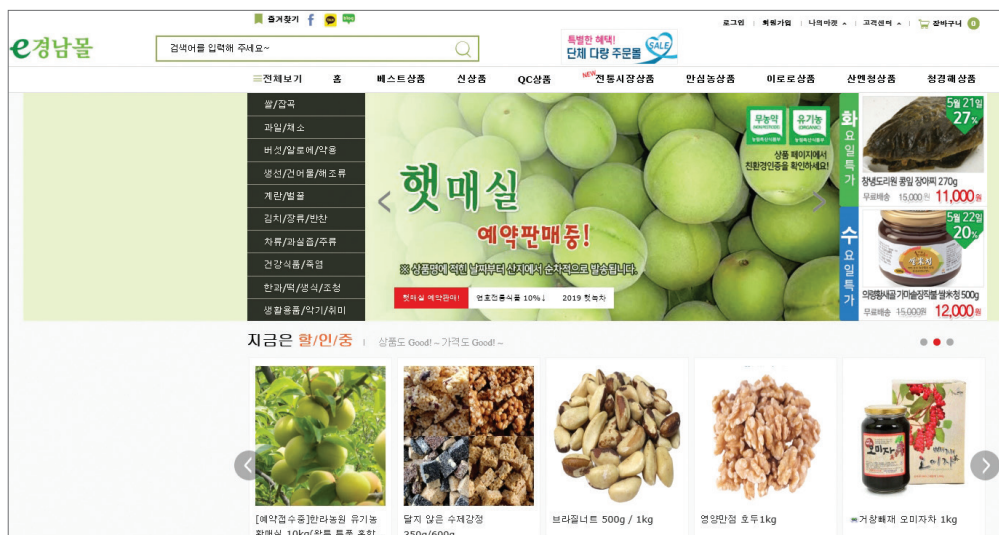
- 「봉화장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신청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문의처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생활경영담당
전화 054-679-6873 / 팩스 054-679-6879
홈페이지 http://bmall.go.kr/mall/bbs/content.php?co_id=enter



19 e경남물



지역/홈페이지

- 경상남도 / egnmall.net

쇼핑몰 소개

- 경상남도가 구축하여 (주)경남무역과 코아정보기술(주)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입점대상

- 경상남도 내 사업장(본사 및 공장) 보유
-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또는 제조/가공업체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업체 (농수산물 유통업체 제외)
- 경상남도 추천상품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상품이거나 안심농 회원농가로 농업기술원장의 추천을 받은 상품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입점 품목

-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과 그 가공품(국내산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사용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함)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유기, 도자기, 공예품 등)

입점방법

- 입점방법 : 입점신청(e경남몰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및 검토 → 입점 심사 → 입점 승인 → 상품 등록 및 판매

수수료

- 입점수수료 : 없음
- 판매수수료 : 2%(카드 수수료 포함)



문의처 경남몰 고객센터 전화 055-284-1840 / 이메일 help@egnmall.net



20 거시기장터



지역/홈페이지

- 전라북도 / www.jbplaza.com

쇼핑몰 소개

- 전라북도 농특산물 쇼핑몰로 중간상의 개입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비영리 직거래 장터, 소비자들은 농가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생산능가 및 입점업체들은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함

입점대상

-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등록증 보유한 업체
-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 공장이 등록된 도내 소재 제조 사업장(소매, 유통업 제외)

입점 품목

-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합죽선, 한지공예, 목공예품 등) 및 도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 주말농장, 과수임대, 체험상품 등
 -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품목 대상에서 제외함 (예 : 주류, 담배, 의약품 등)

입점업체 의무사항

- 1회 이상 택배비 부담청구 시 배송비 지원제외
- 입점승인 후 2개월 이내 판매상품 등록
- 연중 1회 이상 프로모션 참여
- 위 의무사항 불이행시 판매제한으로 전환

입점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접수 :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
- 서류접수 : 상품군별 관련 서류를 거시기 장터 고객센터 접수 (접수방법 선택 가능)

수수료

-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무료
 - 카드/실시간계좌이체(제휴할인 포함) 전자결제에 이용되는 직접 수수료만 차감 후 정산



문의처

거시기장터 운영센터 전화 063-711-2033~2035 / 이메일 jbpplaza@jbba.kr



21 순창로컬푸드



지역/홈페이지

- 전라북도 순창군 / www.sunchangfood.kr

쇼핑몰 소개

- 순창로컬푸드 행복한 장터는 순창군 11개 읍·면 개별농가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과 순창군 소재 마을 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업체가 생산한 우리 농산물 가공품만을 판매하는 농산물 장터

입점대상

- 순창군소재

입점 품목

- 쌀/잡곡, 과일/견과, 채소, 축산물, 농가공, 공예, 기타

입점방법

- 순창로컬푸드홈페이지 → 입점신청 → 순창물 담당자 확인후 연락

수수료

- 입점수수료 : 10%
- 판매수수료 : 판매대금의 10%



문의처

순창로컬푸드 고객센터 063-652-2289



전라남도

22 남도장터



지역/홈페이지

- 전라남도 / www.jnmall.kr

쇼핑몰 소개

- 전라남도 농, 수, 축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써, 전라남도 22개 시, 군에서 생산된 농, 수, 축산물을 판매

입점대상

-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는 자
→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입점 품목

- 쌀, 농수축산물, 반찬류, 김치류, 건강식품, 공예/특산물

입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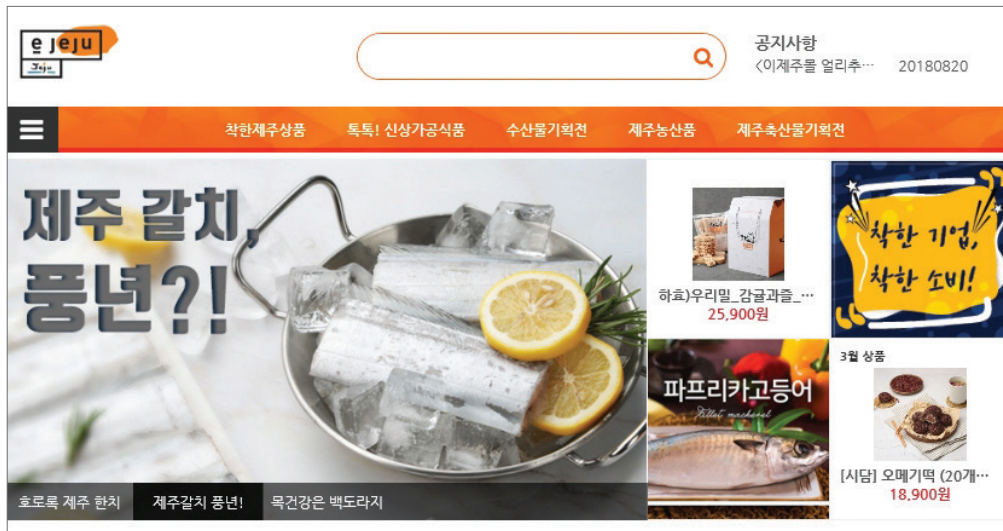
- 입점서류 신청접수 → 신청서류검토(서류심사) → 입점업체 현장실사 → 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분류 → 선정결과와 통보 → 입력자료 조사 → 입점상품 정보등록 → 판매개시



문의처 남도장터 고객센터 070-7816-8510



23 e제주물



지역/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 mall.ejeju.net

쇼핑몰 소개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통으로 개발한 인터넷 쇼핑몰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를 지원

입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서
 - 도내 제조업체 생산제품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 OEM 제품의 경우는 원재료가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기타 전시판매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상품

입점 품목

- 지역특산가공품, 건채류, 수산물, 공예품, 보석류, 향수류, 악세서리 등

입점방법

- 입점신청(연중,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에서 오프라인 신청접수) → 신청자 조사 및 평가 → 입점승인 및 계약체결 → 상품입점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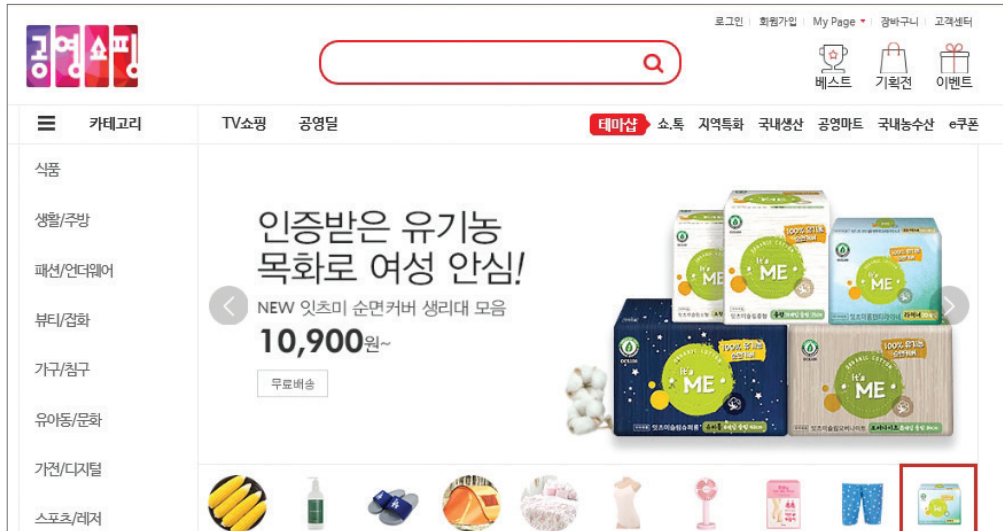
- 품목별, 형태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건별로 문의 필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판매장운영팀 064-751-3320
홈페이지 <https://mall.ejeju.net/mim/guide.do>



24 아임쇼핑몰



홈페이지

■ www.immall.co.kr

쇼핑몰 소개

■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모바일쇼핑몰의 3-Screen 판로체제를 바탕으로 주주사와 연계한 창의혁신 및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 판매를 지원

지원내용

- 방송&온라인 판매 지원
- 해외수출 지원

입점대상

- 상품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
- 상품기획 후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협력업체
- 제조업체가 출자하여 만든 판매법인
- 재고책임을 지는 매입총판

입점방법

- ① 입점 제안 ② 제안 검토 ③ MD상담 ④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방송 상품만 해당) ⑤ 품질검사 QA
⑥ 협력사 등록 ⑦ 전자계약 체결 ⑧ 방송&온라인 판매 진행

수수료

- 입점수수료 : 평균 2~3%
- 판매수수료 :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입점 체결시 협의.



문의처 02-6350-8888, 8889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홈페이지 <https://www.gongyoungshop.kr/instore/selectInstoreIndex.do>



25 아임스타즈



홈페이지

■ www.imstars.or.kr

쇼핑몰 소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유통지원 포털 사이트

지원내용

1. 마케팅지원사업

1) 마케팅 역량강화

■ 마케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 프로그램(마케팅·브랜드·홍보)을 통한 집중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성·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

- * 국내 제조업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제외품목(1차 식품·주류·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류기기·수입품·의약품·건강 기능 식품 등)은 지원불가
- * 공동상표를 이용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대표자 또는 조합·단체 대상으로 지원하며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 또는 욕탕 등을 운영하는 업종은 지원 불가
- * 관리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마케팅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은 기업 또는 조합·단체의 경우, 1회로 참여 제한

2) 대한민국 마케팅 Fair

■ 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판로 확대를 위해 실질적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는 종합전시회 개최

■ 전시회 참여 모집기간 : 1~5월

• 전시회 구성

- 마케팅지원사업 참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판로유공자 시상식
- 대한민국 히트스타상품 TOP5 공개오디션(공중파 생방송)
- 국내·외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 중소기업 판로주간 “아임스타즈워크” 판매행사 및 홍보 지원

* 판로유공자 및 공개오디션TOP5

3) 공동A/S지원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인력 등 부족으로 스스로 체계적인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적인 중소기업 A/S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자 신뢰향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고객센터 대응(A/S상담·처리) 체계 지원 강화
- 참여기업 고객상담 지원, 중소기업 공동 A/S 고객센터 운영
- A/S전산 시스템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A/S를 위하여 양방향 실시간 A/S전산시스템 활용 지원
- 전국망 A/S대행 연계인프라 지원, 참여기업의 신속한 A/S처리를 위해 전문 A/S대행업체의 전국 지점망 연계 및 택배 통합수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국적 A/S 서비스망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종사자 A/S역량강화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자사 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서비스품질 강화를 위하여 기업체 근속직원 대상 A/S 핵심직무 교육을 추진·지원

4) MRO 납품지원

- 국내 유일의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지원센터로서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MRO물 시스템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및 중소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구매 대행 등 지원

2. 유통지원사업

1) 아임셀러

- 중소기업 제품의 주요 오픈마켓 및 온라인 종합몰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 국내 11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능 무료 제공
- 아임셀러를 통한 온라인몰 입점방법 등 사용안내
- 아임셀러와 온라인몰 연계를 위한 API키 발급
- 아임셀러 소개 및 온라인마케팅 방법 무료 교육(연10회)
 - * API키 : 아임셀러와 온라인몰의 상품, 주문, 배송 등 판매정보 연동을 위한 통신언어

- 입점대상

-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가 가능한 모든 제품

2) 4대TV 홈쇼핑방송지원

-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TV홈쇼핑사와 공동으로 우수중기제품을 선정, 방송판매를 통한 판로지원 추진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www.imstars.or.kr-상단 사업신청-사업신청-2017년 4대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공고

- 사업신청 제한

- 기존 TV홈쇼핑 방송상품 제외

- 지원내용

- 방송판매 수수료 감면
- 영상제작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4대홈쇼핑(CJ, GS, 롯데, 현대), 방송지원 40회(상품)
 - * 홈쇼핑사별 10회 상품 방송 예정

- 지원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TV홈쇼핑 중소기업 제품 분류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2.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4.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5. 중소기업이 기획하여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브랜드라이센스를 통해 타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 (대기업 및 해외기업 브랜드 포함)
6. 국내 비영리 단체가 생산(제조)한 국내 농·수산물과 이의 단순 가공품
 -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기능 식품, 의약품 또는 산업재 등 방송 지원 제외
 -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가 목적이므로, 기존 TV홈쇼핑을 통해 방송되었던 제품은 지원 제외

3) 공영홈쇼핑방송지원(국내)

■ 공영홈쇼핑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TV홈쇼핑 방송지원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내용(연간 20개 제품 내외)
 - 공영홈쇼핑사와 협력을 통해 회당 약 40~50분 방송판매 지원
 - 정부는 방송 판매·홍보비를 홈쇼핑사에 지급하고, 홈쇼핑사는 우대 판매수수료 적용
 - 지원규모 : 방송지원 20회(1개 제품당 1회 방송)

4) V-커머스 홍보판매지원

■ 민간 V-커머스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 동영상판매 및 온라인홍보지원

- 지원내용
 - (동영상판매 및 온라인홍보) 상품별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몰, SNS등을 활용한 홍보 판매 지원
 - * 단, 본 사업은 영상제작지원 사업이 아님에 따라 제작된 영상은 참여 중소기업에 제공 불가
 - 지원규모 : 70회(30개 제품)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5) 공영홈쇼핑

■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판매대행(벤더업무) 현재 공영TV홈쇼핑, 현대, 롯데, GS 등 주요 홈쇼핑사에 방송판매 대행업무 진행중임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제조업체상품(ODM 상품제외)
- 사업내용
 - 공영TV홈쇼핑(인터넷, 모바일)방송진행을 위한 상품제안

- 신청방법

- step1. 아임스타즈가입, 로그인>사업신청>공영홈쇼핑 → step2. 사업안내확인, 자가진단, QA, QC 내용확인 → step3. 공영TV홈쇼핑 상품제안 대행업무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연중

6) 6대 TV홈쇼핑

■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판매대행(벤더업무), 현재 공영TV홈쇼핑, 현대, 롯데, GS 등 주요 홈쇼핑사에 방송판매 대행업무 진행중임

- 지원방법

-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제조업체상품(ODM 상품제외)

- 사업내용

- TV홈쇼핑 : GS, CJ, 롯데, 홈앤, NS, 현대홈쇼핑 벤더업무

- 신청방법

- step1. 아임스타즈가입, 로그인>사업신청>공영홈쇼핑 → step2. 사업안내확인, 자가진단, QA, QC 내용확인 → step3. 공영TV홈쇼핑 상품제안 대행업무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연중

7) 정착매장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을 발굴·선별하여 상권이 우수한 공공·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아임쇼핑)을 운영하여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판매촉진

- 신청자격

-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제품판매, 전시, 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한 판촉, 홍보 지원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매장 형식으로 운영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기회 제공

- 신청방법

- step1. 발굴연계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 step2. 유통마케팅지원사업 → step3. 해당지원사업 신청하기 → step4. 제반서류 등록

- 신청기간

- 상시(1월~12월)
- 짝수달에 개최되는 상품선정위원회는 해당 월 15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진행

8) 행복한백화점(1~3층)

■ 신제품, 아이디어상품, 벤처창업 등 판로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판매장 제공 및 인큐베이팅

- 신청자격
 -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한 고객선호 우수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 신청방법
 - step1. 발굴연계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 step2. 유통마케팅지원사업 → step3. 해당지원사업 신청하기 → step4. 제반서류 등록
- 신청기간
 - 연중

9) 온라인쇼핑몰기획전

■ 혁신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 판매기획전 운영

- 지원내용
 - PC/모바일 기획전 운영(중기제품 전용배너관 구축, 연간30회 이상)
 - 매체별 특성에 따른 추가 프로모션 지원(쿠폰 등)
- 지원대상
 - 기획전 기간 내 판매가를 유동적으로 조정가능한 상품
 - 온라인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및 QC서류가 구비 된 업체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2. 7(목) ~ 3. 8(금)(1개월)

10) 오프라인 기획전

■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획전에 판매 연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신청자격
 -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 국내 제조 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소기업
 - * 지원제외 품목 : 수입제품, 1차 식품 등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오프라인 기획전 총 15회
 - 지원내용 : 대형유통업체 내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판매 기회 제공
- 신청방법
 - step1. 아임스타즈가입, 로그인 → step2. 유통지원사업 신청하기 → step3. 오프라인기획전(판매전 Pool모집) → step4. 제반서류 및 상품등록
- 신청기간 : 1~11월, 연중

11) 동반성장 복지물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해 복지물 입점을 지원

- 입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제조 완제품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제조 및 유통사)
- 사업내용
 -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임직원물 입점 지원
 - 온라인 신규 판로지원 기능 수행
 -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테스트 시장 역할
- 사업현황
 - 현대자동차 동반성장물 : 현대자동차 임직원 대상 동반성장물 오픈 준비 중
 - LG그룹 복지물 : LG그룹 임직원 대상 '임직원물 입점' 운영 중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무원 등 제휴서비스 고객 대상 '최저가물' 운영 중
- 문의
 - 동반성장물 도입 및 사업안내 : 온라인개발팀(02-6678-9813)
 - 동반성장물 상품입점판매 안내 : 온라인 운영팀(02-6678-9821~3)

3. 소상공인홈쇼핑입점지원

1) 소상공인 홈쇼핑 진출교육

■ 소상공인의 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교육 지원

- 신청대상
 - 홈쇼핑 등 온라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사업내용
 - 국내 홈쇼핑 진출 입점절차 등에 관해, 분야별 민간 유통전문가와 교육 및 멘토링 상담 진행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차수별 신청기간 아임스타즈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2) 소상공인 판로채널 입점지원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채널을 통한 소상공인상품 판매지원

- 신청대상
 - (공통 사항)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채널 진출 희망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종합몰 등)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홍보 및 상품 판매 지원(연 25회)
 - T-커머스/TV홈쇼핑 : T-커머스/TV홈쇼핑 채널에 소상공인 상품판매 전용시간 확보 후, 방송준비 및 입점지원(연 200개사)

- 국내 V-커머스 : V-커머스가 가능한 민간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해 소상공인상품의 영상콘텐츠 제작 및 판매 지원(연 300개사)
- 해외 온라인 : 소상공인제품 해외 온라인몰 입점, V-커머스 및 제품 홍보영상 해외 송출지원 등 (연 50개사)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차수별 신청기간 아임스타즈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3) 1인방송아카데미

■ 소상공인의 1인방송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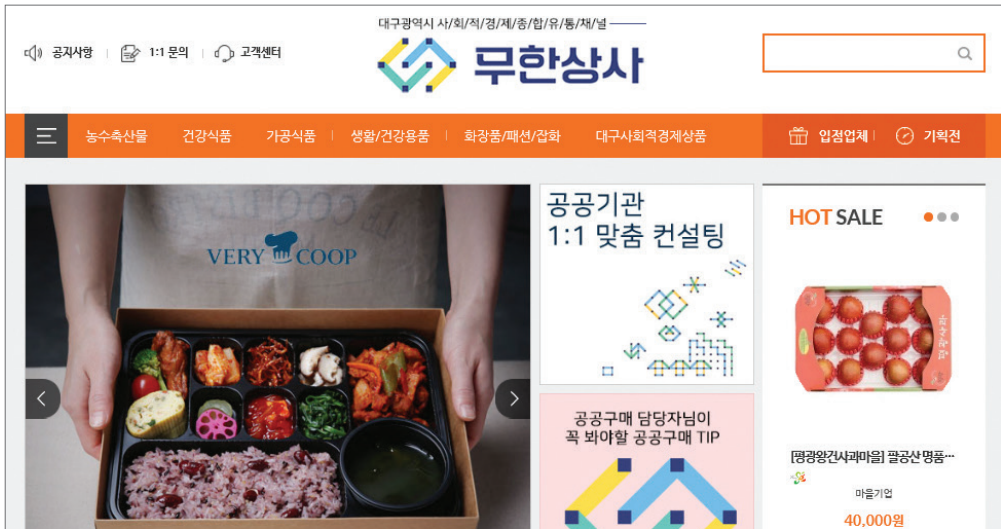
- 신청대상
 - 1인방송을 통한 V-커머스에 관심있는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사업내용
 - 소상공인상품 판매가 가능한 1인방송 크리에이터 양성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연간 총 100명
 - 양성과정 : 직접 1인방송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콘텐츠제작 및 방송스킬 등 교육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차수별 신청기간 아임스타즈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4) 소상공인 상품보안 및 컨설팅

■ 소상공인 제품 전문가 진단, 소비자 반응 조사 등 지원

- 신청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사업내용
 - 관련 업종 전문가 진단 및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한 제품 소비자 반응 조사 등 지원(연 30개사)
- 사업참여 신청
 - 아임스타즈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차수별 신청기간 아임스타즈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26 무한상사



지역/홈페이지

- 대구 / muhancoop.co.kr

쇼핑몰 소개

-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구시 지원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진입을 지원해주며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 상품 등을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매칭시키면서 협력경제와 공생경제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입점대상

- 대구, 경북지역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입점품목

- 농수축산물, 건강식품, 가공식품, 생활·건강 용품, 화장품 패션잡화

입점방법

- 입점신청(연중/ 온라인방식/ 무한상사에 상품제안서 신청접수) → 신청자 조사 및 평가 → 입점승인
→ 상품입점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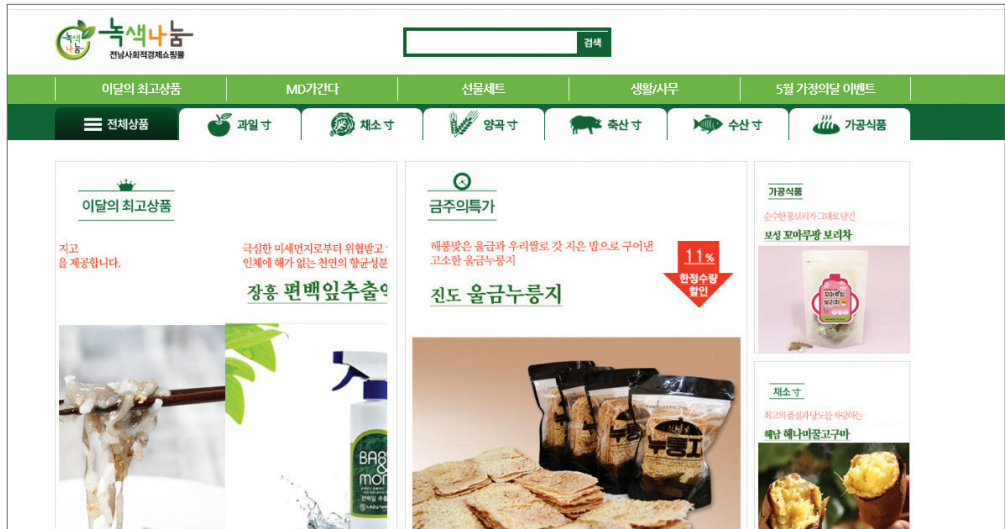
- 개별 제품별로 상이하게 산정



문의처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1588-4378



27 녹색나눔



지역/홈페이지

- 전남 / www.greenanum.co.kr

쇼핑몰 소개

- 녹색나눔은 전라남도에서 소재지를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을 위탁 판매하는 입점형 쇼핑몰로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만든 공통브랜드

입점대상

- 전남의 소재지를 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입점품목

-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입점방법

- 신청방법 : 메일 신청(greenanum@hanmail.net)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수수료

- 10% (외부 오픈마켓 수수료 포함)



문의처 고객센터 1644-7661 / 직통전화: 061-532-8855



28 스물세그루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경제 쇼핑몰!

착한생산, 착한소비, 착한생각

스물세그루 자세히보기

이제는 쇼핑도 특별한 가치가 담겨있는 가치쇼핑하세요.
스물세그루에서 쇼핑하면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홈페이지

- 경상북도 / www.23gru.com

쇼핑몰 소개

- 스물세그루는 경상북도지역 23개의 시군구를 상징하는말로 한그루 한그루가 모여 경상북도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경상북도지역 23개 시군구, 250여개 상품을 취급, 운영

입점대상

- 전국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 지역명물로 인정되는 생산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점품목

- 푸드, 생활용품, 특산품, 지역서비스상품, 공공구매 제품, 선물세트 등

입점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경북광역자활센터[스물세그루] 대표메일 gbssc@gbssc.or.kr로 가입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 **서류접수** : 온라인 입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통신판매신고증, 상품군별 관련 서류

수수료

- 입점수수료는 0%
- 판매수수료가 5.5%~7.7% (전자결제 포함한 수수료)



문의처 경북광역자활센터 기획개발팀 전화 054-834-8074 / 이메일 cmk23@gbssc.or.kr



2019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

전국사업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전화 031-697-7700
팩스 031-697-7889
웹사이트 www.coop.go.kr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우: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www.coop.go.kr www.socialenterprise.or.kr

Tel.031-697-7700 Fax.031-697-7889